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 결과 발표회

■ 일 시 : 2005. 10. 5(수) 낮 2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노동건강연대 / 인쇄노조 / 일반노조 / 금속노조 /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 /
성수삼일교회 내일의집 / 성동실업자지원센터 / 민주노총서울본부 / 성동건강복지센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2005. 10.

주최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인권정보자료실
ESj1.41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 결과 발표회

■ 일 시 : 2005. 10. 5(수) 낮 2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노동건강연대 / 인쇄노조 / 일반노조 / 금속노조 /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 /
성수삼일교회 내일의집 / 성동실업자지원센터 / 민주노총서울본부 / 성동건강복지센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

함께 한 사람들 • •

공동집필자

김성기, 최창준(민주노동당 서울성동구지역위원회)/문종찬, 임미진(언론노조 서울경인 지역인쇄지부)/임재경(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이상윤, 전수경,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전현정(성동건강복지센터)/백종선(성동실업자지원센터)/정태효(성수삼일교회)/손정순, 김민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문대(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못 다한 이야기’ 대담 진행

임미진 최창준 전수경

실태조사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오주영 전수경 스즈키 아키라 이상윤 윤석진 이서치경 류순희 소연 류장환 김원규
강문대 박명혜 최창준 김성기 임영기 박영천 김정이 한주택회 정태효 김미영
박규상 임재경 전현정 박미경 백종선 박옥경 이영애 문종찬 김미란 임미진 민경화
이진희 송은아 이윤경 신문옥 손정순 김민정 송선미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민주노동당 서울성동구지역위원회, 노동건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실업자지원센터, 성수삼일교회 내일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금속노조 서울동부지회

도움 주신 분들

최영진, 하늘기획(동영상기획) / 송선미(유인물 디자인)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성진분회(보고서 편집) / 김수정(시화정책연구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뼈내며

지난 5년간 성수동에서 펼쳐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오늘의 발표회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리란 예감이 듭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지역 노조, 활동단체들의 오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사회의 저 아래쪽에서, 담장 안의 막힌 사각 안에서 망치를 두드리고, 기계를 돌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밀실을 벗어나 열린 광장으로 나서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노조와 단체들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만들어놓은 노동자 참여의 마당을 조금씩 넓혀가고, 규모가 작더라도 열린 광장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활동,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대기업 노조들이 하는 건강검진이나, 산재보상과는 다른 절실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퇴우는 출발’ 내 목소리를 내는 시작이, 우리가 일하는 작업장에 대해 얘기하고, 노동에 단련된 내 몸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조사결과 발표회는 5백여 명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힘차게 당당하게 자신의 노동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사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자부심으로 말하듯이 ‘이 나라를 먹여살려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기에, 그에 합당한 사회적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노동자도 아니요, 비정규직노동자도 아니요, 사회적으로 거대한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외침이 더 커져야 합니다.

일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언제나 노동하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 더 늦기 전에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 사회와 국가정권은 너무도 뻔뻔하게 이들의 피땀위에 부와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내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역시 성수동 지역이 곧 전국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밀집지역이라 여기고, 제대로 운동을 만들어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음성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세공장에서 일한지 20년, 늙은 노동자가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요? 쌀이요, 쌀'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노동건강연대/ 인쇄노조/ 일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삼일교회내일의집/성동실업자지원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성동건강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

격려사

이해삼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성수동 지역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조사작업이 이렇게 발표회까지 하게 된 데 수고하신 동지들에게 먼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성수동지역은 구로지역과 아울러 서울의 준공업지역입니다.

구로지역이 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전자부속품 공장과 아파트형공장, 의류매장과 창고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면 성수동지역은 여전히 중소제조업(인쇄, 금속, 제화 등)이 다수 존재하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중소 영세업체의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문제이며 고용시장의 문제입니다.

또한 4대 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의 미적용 사례가 많은 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초국적 제국주의 자본의 신식민지 지배라 할 수 있는 IMF 등의 강요, 정부의 재벌, 대기업위주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정 지역의 세밀한 조사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큰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다수인 영세업체 노동자의 삶을 구체적인 정책과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상당 부분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사회가 비정규직의 공화국이고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중소영세업체 근무하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차별과 저임금,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 가입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발표회가 먼저 문제해결의 주체인 성수동 지역의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소영세업체의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할 수 있

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성수동 거리거리에서 발품을 팔며 성실히 조사작업에 매달린 헌신적인 동지들에게 깊은 동지애적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격 려 사

고종환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반갑습니다.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성수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의 삶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세계화를 앞세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가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의 고통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성수지역의 경우에는 뉴산업단지 종합 발전안 - IT · BT 등 첨단산업단지 육성 - 이 내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발표되어 있어, 현재 성수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절대다수의 영세제조업체들은 모두 타지로 이동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결국 성수지역의 노동자 상당수는 생존권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수지역의 노동조건과 주민복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 삶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열악하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친화적인 사회여건을 만들어내는 최후보루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최근 흐름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 · 주민에 대한 관심은 영세사업장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첫걸음이고 사회적 관심을 채자 촉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본 실태조사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산업단지 종합발전안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수지역 노동자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쳐내는 행정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라는 가을, 우리들 마음은 실로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 산업재해로 치료받지 못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거나 몸에 불을 끊겼고, 심지어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살해당

했으며 이 노동자들의 수천 배 아니 수만 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성수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실태조사를 완수해 낸 노동자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있고, 이들처럼 현장에서 지역에서 쉼 없이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주민들의 삶을 이제야 계량화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사회구성원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는데 복무하기를 바라며, 실태조사를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천하고 싸우고, 함께 이깁시다. 고맙습니다.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 일시 : 2005. 10. 5(수) 낮 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 순서

사 회 : 임미진 / 공동실태조사단

- 격려의 말

이해삼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고종환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 동영상 상영

- 경과보고

- 발표

영세노동자 노동실태
노동안전건강실태
노동복지
사업주 실태

문종찬 /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지부장
임형준 /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최창준 / 민주노동당 서울성동구위원회
김성기 / 민주노동당 서울성동구위원회

- 지정토론

손정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호 /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목 차

보고서를
내며
격려사

1부

1.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사업의 배경과 경과 15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 요구안 20
3.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결과
 - 1)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25
 -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과 건강실태 51
 - 3)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실직자의 노동복지 실태 및 요구 60
 - 4)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실태와 특성 91

2부

1.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137
2. 주장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과 희망을 위하여 170
3. 실태 조사 참여자의 후기 176
4. 상담사례 183
5. 자료사진 184
6. 함께 한 사람들 186

부록

- 실태조사 요약본 189
설문지 229

070
卷之三

三

三

071 本經 十二經脉 十五別道奇偶合脉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三

三

072 本草 十二經脉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三

073 本草 十二經脉 十二經筋 十二皮膚 十二筋膜 十二肌 十二脈空 十二原氣 十二經絡 十二經穴

1 부

1.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사업의 배경과 경과 15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요구안 20
3.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결과
 - 1)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25
 -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과 건강실태 21
 - 3)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실직자의 노동복지 실태 및 요구 60
 - 4)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실태와 특성 91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사업의 배경과 경과

1. 조사 사업의 배경

○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사회의 불평등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족쇄가 광범위하게 물리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은 전 산업영역, 전 업종에 퍼져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소영세업종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 성수동 지역은 영세산업 및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대표적 밀집지역이다. 특히 금속, 제화, 인쇄, 의류 등 중소 영세업종이 많은 곳이다. 현재 지역의 영세업종은 많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확한 통계 치로 잡혀있지 않지만 경기 불황으로 부도·폐업하는 업체가 수시로 생겨나고 있으며 공장이전이나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작은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노동안전 등 노동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다.

○ 성수동 지역은 의류업종을 제외하고 3개의 지역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노조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 노동상담, 노동권옹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이 영세하여 기업별 노조를 거의 조직하기 힘든 상황이며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과 관련한 지원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다만 최근 제화노조(현,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제화지부)에서 ‘외국산 제화 수입 물량 쿠터제 도입’, ‘위장 개인사업자 폐지’를 요구하며 대기업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2004년 서울시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뚝섬 IT·BT 등 첨단 산업단지’ 종합 발전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6월부터 ‘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발 시기는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성수동 공단 지역은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구로구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으로 ‘구로구에 존재했던 수많은 영세 공장들은 대부분 타지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 대형 물류센터와 의류센터들이 들어섰다’고 한다. 하기에 이 일이 현실

화 될 경우 성수동 지역에서 작은 공장을 일터로 갖고 있는 업주와 종사자는 커다란 생존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의 중소기업 배제 경제 정책에 더하여 예정된 서울시의 성수동 준공업지역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 산업 기반은 와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고통은 대부분 비정규직 상태에 처해있는 노동자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첫 시작은 현장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 실태조사의 결과는 성수동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일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가 될 것이다.

2. 조사 사업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 ①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 요구도를 조사한다.
- ②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방안을 사회적으로 요구한다.

(2) 조사대상

- ① 규모 :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사업주
- ② 업종 : 인쇄, 제화, 의류(봉제), 금속 등의 제조업에 대해 500부 중 최저 수거 기준을 정한다.
- ③ 계층 : 노동자(비정규, 중·장년 여성실업자 포함, 이주노동자 제외)

(3) 조사방법

- ① 교육된 조사원이 일대일 면접 조사한다.
- ② 현장방문 및 거리조사 방법으로 진행한다.

3. 조사사업 경과

(1) 영세사업장 관련한 지역의 공동 활동 및 상황

1) 성수동 식구들의 활동

- ① 성수동식구들은 성수동지역에 활동하는 지역노조와 노동자건강복지에 관련된 단체로 구성되어 2002년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문제의식으로서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사업장규모가 적어도 실천할 수 있는 노동 안전 활동을 제안하며,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참여 노동 안전 활동”을 실시했다(2003년)
- ② 지역노조의 선전, 조직화사업과 아울러 영세사업장 노동자 무료 검진을 2003년, 2004년에 진행했다. 특히 2004년은 유기용제 특수검진과 동시에 설문조사도 실시해 4대보험에 적용되어 있지 않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실태를 볼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대상이 적어서(60명) 유의한 조사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보다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요구되었다.

③ 설문조사사업에 이른 흐름

- 2004년은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 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영세사업장노동자를 위해 건강복지센터 건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1년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센터의 상, 접근방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었다.

④ 2004년 9월 17일 ‘서울지역 영세노동자 노동건강복지센터 간담회’

- 노동건강연대,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일반노조 제화지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 성동건강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성수동 식구들’이 주최한 서울지역 영세노동자 노동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

- 이 간담회를 통하여 영세노동자의 노동과 복지를 위한 센터의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정체되어 있는 지역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강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함을 공유. 또한 영세 사업장 종사자,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모색.

⑤ 2005년 성수동식구들 핵심 사업으로 성수동 영세공장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방침

2) 지역노조 협의회 (가) 성수동 민주노총 지역 공동 선전전 진행

- ① 2004년 11월부터 성수동에서 활동하는 3개 지역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가 (가) 성수동 민주노총이라는 협의회 구성
② 월1회 정기선전전을 통하여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을 선전 및 조직사업을 실시 중

3) 제화노동자 실태와 노동자성 인정방안 정책 토론회

- ① 2004. 11. 20.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 주최
- ② 제화노동자 실태 조사 및 노동자성 인정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 실시

(2) '영세노동자 노동 복지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단' 활동보고

1)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노조 및 단체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05년 3월 25일, 10시30분, 성동건강복지센터)

① 성수동 식구들(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일반노조 제화지부, 성동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과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원회가 제안하여, 제기된 문제를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해 성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노조 및 관련 단체와의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함

② 실태조사에 대한 각 단위 입장과 참여방안을 논의, 공동사업추진방안에 대해 결정함

- ⑦ 지역과 영세노동자 대립적인 문제는 아니다.
- ⑧ 대표적 표본이 될 수 있다 - 성수동 지역(영세노동자, 여성빈곤, 지역특성)
- ⑨ 주 설문내용은 영세노동자 중심으로 살리고, 요구하는 단체의 내용을 특화하자(부분적으로 보완하자).

⑩ 최소예산은 공동부담을 하자

⑪ 공동의 책임과 권리가 있어야 한다.(재정과 사람확보)

⑫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자.

- 집행위원(전체회의) : 각 단위 1명 (월1회)

- 실무위원 : 스스키, 김성기, 오주영, 백종선, 임영기, 임미진, (박규상), 전현정(실무회의에서 추가결정)

2) 총 9회의 실무회의와 총4회의 전체회의 진행, 설문지 및 설문조사방법 논의 결정

3) 실태조사 지역 현장답사 3회

4) 조사원교육 2회 (5/12 동부여성발전센터, 6/10 성동건강복지센터)

5) 자문회의 1회 (5/12 동부여성발전센터, 자문: 시화정책연구소 김수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6) 샘플조사 (6/13~16)

7) 설문지 인쇄 (6/22, 노동자 900, 사업주 200, 실직자 200 추가인쇄분 포함)

8) 6차 거리 캠페인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 (6/23~7/31)

9) 조사원 20여명 활동

(각 단체 상근자 및 대표실무자와 각 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

10) 설문지 총 608부 수거 (노동자 478, 실직자 58, 사업주 72)

11) 실태조사 중간평가 및 소감발표 (7/26 동부여성발전센터)

12) 수거 설문지 코딩 입력 (8월)

13) 7회 빈도분석결과 토론회 및 보고서 작성 (8~9월)

14) 심층면접조사 7명 (9/9~9/26, 노동자 여 1, 남 4 / 사업주 1 / 실직자 1)

15) 참가조직 추가, 총 11개 단체

(9/2 단병호의원실-후원에서 공동실태조사단으로, 9/1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3) 발표회 (10/5)

4. 참여조직 :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1)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2)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3) 서울지역일반노조

(4) 성동건강복지센터

(5) 노동건강연대

(6) 민주노동당 서울 성동지역위원회

(7)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

(8) 성동실업자지원센터

(9) 성수삼일교회 내일의 집

(10)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1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 요구안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노동정책은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주요 노동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의 노동복지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영세산업의 침체에 따라 이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본 조사는 2005년 7월에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영세 사업체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자(실업자 포함)뿐만 아니라 사업주 실태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노동자 478명, 사업주 72명, 실업자 58명이다.

○ 이에 기초하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및 복지 실태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사회적 과제로는 ① 노동 여건 개선 방안 ② 노동안전 개선 방안 ③ 공공노동복지 개선 방안 ④ 고용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덧붙여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의 한계’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업주 자신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기초해 ⑤ 정부의 중소영세 사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끝으로 ⑥ 성수동 뉴산업단지조성의 과제도 제시한다.

1.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

(1)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토요일 전일 근무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18%의 노동자만이 연차휴가를,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사업주’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20%에 불과하였고, 변형된 고용방식인 소사장제, 도급제도 20% 가량 나타났다.

(2) 영세사업장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

○ 사업장내 ‘표준근로계획서’ 작성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근로감독관’ 증원을 이행해야 한다.

○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기준법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 소사장제, 도급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2.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 및 과제

(1)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

○ 작업환경과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노동자가 분진, 소음, 반복작업 등 전통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노동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치료비가 부담돼서’ 병의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이르렀다.

○ 또한,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인 성수동 노동자들의 경우 78% 가량이 지역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몰라서(34.2%)’, ‘거리가 멀어서(26.8%)’ 대다수 노동자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 지역 일반 보건의료와 산업보건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공공적 지역보건 센터'를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 지역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와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3.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개선 방안

(1)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실태

○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보험 사업장 적용률은 55%로 나타났으며, 역으로 '사업주 실태'에서는 20% 이하로 나타났다. 정부는 4대 보험 가입률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80%를 상회하고 있다는 발표했지만, 이것이 허구인 것임이 밝혀졌다.

○ 개인과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 일자리 불안문제 - 주거문제 - 문화 및 여가활동 부족 문제 순이었다.

-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72%가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 거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5,700만원 가량이었으며, 월세는 27만에 달했다.

- 지역사회에서 공공 보육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자들의 직업훈련과 노동상담,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율은 20% 이하로 나타났다.

- 한편 개인의 재충전을 위하여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노동복지서비스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 노동자 중의 42.7%가 요구하였다.

○ 이러한 영세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약 50%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들도 59.7%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2)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개선 정책 과제

- 현행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노동보건복지'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

는 '영세노동자노동복지센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공공노동복지정책의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고, 광역시도단위까지 '노동자정책 위원회' 설립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대한 재정 자립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정부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5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 전세 및 주택자금 융자'의 적용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 중소영세사업체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서의 공공보육시설 건립을 더욱 확대하고, 보육 기능과 방과 후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중장년층, 임시일용직 등의 고용 취약 계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다양한 실업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 영세사업장 사업주 실태 및 정책 개선 과제

(1) 영세사업장 사업주 실태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62.3%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 82.6%는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주들은 공장운영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임차료 및 설비 운영비 문제' 20.3%, '불안정한 대금 회수(결제)' 20.3%, '영업부진 및 판매부진' 20.3%, '납품 단가 문제' 9.4%, '인건비 부담' 8.6% 등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 거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청단가 인하 요구' 35%, '어음할인료 미지급' 16.7%,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의 문제' 11.3%, '일방적 발주 취소' 3.3% 등으로 나타났으며, '어음 결제 미이행', '어음 결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값싼 임대료와 좋은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공장단지 조성' 27%, '현실성 없는 중소기업 대출정책' 18.3%,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16.7%, '세금경감' 12.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부족' 11.9%,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법' 7.1%, '불합리한 규제 완화' 4.8% 등으로 나타났다.

(2) 중소영세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 하도급 거래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하도급 거래의 사각지대

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률 의무화하는 규정, 어음 거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 하며, 공정 거래 확립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경력, 생산성, 노동자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 보증을 통하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저렴한 임대료와 생산활동 기반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중소 영세 사업체 육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5.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정책 과제

(1)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노동자, 사업주의 입장

○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주들은 '영세업종의 생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책이 필요하다'에 각각 60.2%와 69.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한다'에 대한 의견은 각각 6.7%와 8.7%로 나타났다.

(2)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 방향

○ '첨단-전통이 조화되는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방향과 전통적인 제조업종의 경쟁력 확보라는 양자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에서 단지 조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저렴한 임대료와 생산활동 기반처리 시설을 갖추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 '환경-노동복지가 조화되는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환경 정화 시설과 유해요인 차단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단지 조성과 동시에 영세 사업체 노동자의 공공복지지원시설 구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단지 입주조건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 규정을 두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 노동자용 설문조사 중 노동조건 설문을 중심으로 -

대표집필 : 문종찬 /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지부장

1. 성수동영세사업장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주체 및 조사목적

1) 조사주체

○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조(인쇄노조, 제화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건강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의 상근 활동가들이 모여 '영세사업장 노동안전 활동가 네트워크'¹⁾를 구성하고 활동 하던 중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및 복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공동사업을 제안함.

○ 2005년 3월 '아름다운재단'이 후원하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서울 성동구지역위원회, 성동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 성수 삼일교회 부설 내일의 집, 성동실업자지원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서울지역 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 동부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참여하는 '영세노동자 노동복지를 위한 공동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사업을 벌임.

2) 조사목적

○ 1993년 이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체와 이러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전체 노동자 10명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정책은 이들 집단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2001년부터 활동을 하여 '노동자 참여형 노동안전활동(POSITIVE)', 무료 건강검진 사업과 상담 활동을 주로 하였고 그 성과로 2003년 시민단체활동가 대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사업체의 노동조건은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날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구조적인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따라서 본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실태와 복지실태 및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기업복지의 한계를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활동 등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특히 각종 조사와 법·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찾는 것도 주요한 사업의 중 하나이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장의 노동·복지 개선 방안을 사회적 과제로 제출하고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소득 격차 개선과 노동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2)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의 제조업 노동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²⁾를 실시했다.

○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성수동 거리에서 설문부스를 설치하고 설문조사 사업을 벌이고 공동조사단 참가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함.

나. 조사방법

○ 조사는 사전에 교육된 조사원이 거리 설문부스에서 면접 조사와 일부 현장 방문 조사 그리고 공동조사단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조사기간은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39일간 진행했으며, 1차 분석 후 심층면접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2.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분포

1) 일반적 분석

○ 본 조사가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연령과 경력, 기업규모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2) 응답자 분포를 보면 노동자 478명, 사업주 72명, 실직자 58명으로 총 608명이 참여 하였다.

보인다.

○ 다만, 남성응답자(63.6%)가 여성응답자(35.8%)보다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가(71.5%) 많았다.³⁾ 이중 지역적 편중은 본 조사가 서울시내에서 대표적인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거리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실태는 지역적 특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본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다른 통계·연구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다.

○ 업종별 분포에서 인쇄·출판업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리 면접조사 일정에 서울 중구 인현동(일명 읊지로 인쇄골)이 하루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로 고용형태별에서 자영업은 피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장을 말한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 중	구 分	응답자수	비 중		
연령	30세미만	78	16.3	직장	1년미만	145	30.3
	35세미만	92	19.2		2년미만	81	16.9
	40세미만	84	17.6		3년미만	55	11.5
	45세미만	82	17.2		4년미만	53	11.1
	50세미만	69	14.4		5년미만	25	5.2
	50세이상	68	14.2		5년이상	94	19.7
	합계	473	99.0		합계	453	94.8
	무응답	5	1.0		무응답	25	5.2
경력	2년미만	66	13.8	근속	서울 성동구	173	36.2
	5년미만	89	18.6		서울 기타 지역	227	47.5
	10년미만	86	18.0		경기, 인천	69	14.4
	15년미만	69	14.4		기타	2	.4
	20년미만	42	8.8		합계	471	98.5
	20년이상	82	17.2		무응답	7	1.5
	합계	434	90.8		금속	58	12.1
	무응답	44	9.2		인쇄, 출판	132	27.6
성별	남성	304	63.6	업종	의류제조	7	1.5
	여성	171	35.8		제화	45	9.4
	합계	475	99.4		전기 가스 수도	2	.4
	무응답	3	.6		건설	10	2.1
학력	중졸이하	76	15.9		숙박 및 음식	18	3.8
	고졸	248	51.9		도, 소매	30	6.3
	전문 대졸	57	11.9		퀵 서비스	1	.2
	대학 이상	78	16.3		운수	4	.8
	합계	459	96.0		통신	1	.2
	무응답	19	4.0		금융, 부동산, 사업 서비스업	17	3.6
고용 형태	자영업	14	2.9		가사 서비스	2	.4

3) 사업장이 성수동에 있거나, 거주지가 성수동인 경우, 거주지가 서울 성동구인 경우는 36.2%였다.

정규직	358	74.9	개인서비스	1	.2
임시직 시간제	50 18	10.5 3.8	정비 시설관리	3 5	.6 1.0
파견직	4	.8	기타 제조업	77	16.1
소사장제	21	4.4	복지 및 사회서비스	10	2.1
무급종사	4	.8	기타	10	2.1
합계	469	98.1	주유, 가스충전	45	9.4
무응답	9	1.9			
기업 규모	1인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50인 미만 합계 무응답	21 111 116 125 90 463 15	4.4 23.2 24.3 26.2 18.8 96.9 3.1		

○ 한편 가구 구성과 가구 소득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가구원 수 및 가구 소득 수준>

가구원 수			가구 소득 수준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단신가구	52	10.9	100만 원 미만	54	11.3
2인 가구	47	9.8	200만 원 미만	190	39.7
3인 가구	120	25.1	300만 원 미만	137	28.7
4인 가구	169	35.4	400만 원 미만	52	10.9
5인 이상 가구	82	17.2	500만 원 미만	19	4.0
소 계	470	98.3	500만 원 이상	16	3.3
무 응답	8	1.7	소 계	468	97.9
합 계	478	100.0	무 응답	10	2.1
			합 계	478	100.0

[표 3] <가구원 수와 가구 소득 수준>

단위 : 명, (%)

구 分	총 가 구 원 수					전 체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100만원 미만	9 (17.6)	7 (14.9)	23 (19.2)	6 (3.7)	7 (8.8)	52 (11.3)
200만원 미만	33 (64.7)	22 (46.8)	57 (47.5)	50 (30.5)	24 (30.0)	186 (40.3)
300만원 미만	6 (11.8)	9 (19.1)	29 (24.2)	69 (42.1)	24 (30.0)	137 (29.7)
400만원 미만	2 (3.9)	9 (19.1)	6 (5.0)	23 (14.0)	12 (15.0)	52 (11.3)
500만원 미만	1 (2.0)	0 (0.0)	4 (3.3)	7 (4.3)	7 (8.8)	19 (4.1)
500만원 이상	0 (0.0)	0 (0.0)	1 (0.8)	9 (5.5)	6 (7.5)	16 (3.5)
전 체	51 (100.0)	47 (100.0)	120 (100.0)	164 (100.0)	80 (100.0)	462 (100.0)

2) 고용형태 분석 - 영세 사업장에서의 고용형태 구분의 의미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 임시직 - 소사장제 - 시간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노동조건의 요인별 분석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특히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고용형태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그 구분이 모호한 형편이다.

○ 비정규직 증가의 핵심 요인은 사업주들의 '자유로운 해고'에 있다고 할 때, 본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요인은 고용형태에서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굳이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로 고용예약을 맺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본 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채용 당시 사용자와 임금만을 구두로 합의할 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답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 [표4]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1.5%에 달한다. 또한 이직 사유를 나타낸 [표5]를 살펴보면, 사업장 폐업 등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이 32.7%에 이르며 그 외에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이직률이 38.1%에 이르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최근 1년 이내 이직 여부>

구 分	응답자수	퍼센트
이직 여부	예	147
	아니오	320
	합 계	467
	무 응답	11
합 계	478	100.0

○ 실제로 이번 조사의 참가 노조인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간부를 면접한 결과 '2005년 들어 접수 된 각종 상담의 대부분은 체불임금이었으며 재직 중에 체불임금문제로 상담을 오는 경우보다 퇴직 후 찾아오는 경우가 약 80%를 차지 한다.'고 한다. 또한 이 가운데 약 20%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원하지 않았다. 단 한건의 사례만 설득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약간의 금품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표 5] <최근 1년 이내 이직한 경우 이직 사유>

구 분	응답자수(명)	비중(%)
이 직 사 유	사업장 폐업	25 17.0
	정리해고/감원 등	14 9.5
	사업주의 자의	7 4.8
	계약기간 만료	2 1.4
	적성/능력 불일치	10 6.8
	열악한 근로조건	16 10.9
	고용 불안	9 6.1
	장래성 부재	15 10.2
	저임금	16 10.9
	집안사정	9 6.1
	개인상의 이유	7 4.8
	기타	17 11.6
	합계	147 100.0

○ 이렇듯 사용자들이 거의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데 굳이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 최근 3~4년 간 급여지급 방식이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주로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 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체의 구조적 고용불안정 상태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규모별 노동이동률(입직률 + 이직률)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2002년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이동률이 5.7~5.8%인데 반해, 500인 이상 사업체의 그것은 2.6%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⁴⁾

○ 또한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2002년 현재 5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인데, 5~9인 사업체는 3.5년, 10~29인 사업체는 4.3년, 30~99인 사업체는 4.8년으로 규모별 근속년수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⁵⁾

○ 한편 종사자수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종사자수는 1993년 743만명(60.7%)에서 2002년 1,012만명(69.3%)로 269만명(8.6%) 증가했고,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는 211만명(17.2%)에서 127만명(8.7%)으로 84만명 감소했다.⁶⁾ 또

4)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조건 실태' 2004,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재인용

5)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실태조사, 앞의 글 재인용

6)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앞의 글 재인용

한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체수는 82만개가 증가하여 업체당 평균 3.28명 고용 규모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자영업 혹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실례로 대한인쇄연구소의 한 리포트에 따르면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종업원 1~4인 이하의 사업체수의 비중이 1994년 77.5%에서 82.6%로 크게 늘어난 점은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된 인쇄 근로자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기획사 등의 창업이 러시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외환위기 직후 사업체 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담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쓰고 있어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⁷⁾

○ 한편 영세사업체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의 불안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구인란'이라는 인력수급의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영세산업⁸⁾인 인쇄업을 한 예로 들어보면, "인쇄업계는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산업구조조정의 미흡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유출이 계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각한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중략… 전체 부족인원의 89.8%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부족률은 7.0%로 관리직(0.61%), 사무직(0.87%), 단순 노무직(1.63%)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생산직의 인력부족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보고서⁹⁾를 제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노동조건

가. 임금 및 노동시간

① 월평균임금

○ 월 평균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은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7) KPRI리포트 제3호, 대한인쇄연구소, 2003. 5.

8) '인쇄업체 47%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중 72%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 서울인쇄센터발전방향 11쪽, 중앙대학교 디지털컨텐츠리소스센터, 2003. 9.

9) KPRI리포트 제1호, 대한인쇄연구소, 2003. 3.

[표 6]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명

구 분	월평균임금	응답자 수	구 분	월평균임금	응답자 수	
업 종	금 속	183.3	57	1인	121.40	20
	인 쇄 · 출 판	160.3	129	5인 미만	134.66	108
	의 류 제 조	145.7	7	10인 미만	152.88	113
	제 화	175.5	44	20인 미만	139.93	122
	전기ガ스수도	165.0	2	50인 미만	155.42	90
	전 체	112.0	10	전 체	144.16	453
	숙박 및 음식	96.8	18	자 영 업	171.54	13
	도 · 소매	134.6	30	정 규 직	151.78	350
	퀵 서비스	90.0	1	임 시 직	96.82	50
	운 수	103.0	4	시 간 제	74.50	18
	통 신	100.0	1	파 견 직	97.50	4
	금융 · 부동산 · 사업서비스업	191.4	17	소 사 장 제	172.50	20
	가사 서비스	72.5	2	무 급 종 사	95.00	4
	개인 서비스	50.0	1	전 체	143.26	459
종	정 비	130.0	2	남 성	163.84	299
	시 설 관 리	85.6	5	여 성	104.54	167
	기 타 제 조 업	139.6	75	전 체	142.59	466
	복지 및 사회서비스	79.8	9			
	기 타	110.5	10			
	주유 · 가스충전	114.4	44			
	전 체	468				

○ 임금구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69.9%가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정수당 적용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연차 18.0%, 월차 23.8%, 연장근로수당 43.7% 만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상여금을 지급 받는다는 응답자는 56.1%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통 월 고정 급여만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72만원, 30-99인 사업체는 186만원, 10-29인 사업체는 171만원, 5-9인 사업체는 147만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하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 노동부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에 비해 본 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절반 수준인 52.2%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한편 노동부의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2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4

10)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앞의 글 재인용

인 이하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월평균급여는 117만원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132만원)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조사가 자영업자와 소사장제를 포함하였고 응답자 중 인쇄 · 출판업, 금속, 제화 업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 업종간 임금격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최소, 최대의 격차가 4배에 이르기까지 한다.

② 주당 평균 노동시간

[표 7]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주당평균노동시간> 단위 : 시간, 명

구 分	평균 시간	응답자 수	구 分	평균 시간	응답자 수	
업 종	금 속	47.3	57	1인	43.4	20
	인 쇄 · 출 판	53.2	130	5인 미만	51.6	110
	의 류 제 조	46.0	7	10인 미만	52.2	112
	제 화	62.5	43	20인 미만	52.3	125
	전기ガ스수도	48.0	2	50인 미만	53.4	89
	전 체	54.4	10	합 계	51.9	456
	숙박 및 음식	55.2	18	자 영 업	47.7	13
	도 · 소매	51.0	30	정 규 직	52.5	354
	퀵 서비스	58.0	1	임 시 직	49.7	50
	운 수	71.5	4	시 간 제	40.3	18
	통 신	70.0	1	파 견 직	50.0	4
	금융 · 부동산 · 사업서비스업	47.8	17	소 사 장 제	60.3	19
	가사 서비스	35.0	2	무 급 종 사	42.5	4
	개인 서비스	66.0	1	합 계	51.8	462
종	정 비	51.0	3	전체 주당 평균 근로시간 : 51.7시간		
	시 설 관 리	54.0	4			
	기 타 제 조 업	49.8	77			
	복지 및 사회서비스	42.7	10			
	기 타	46.9	10			
	주유 · 가스충전	46.9	43			
	합 계	51.6	470			

○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나, 시간제

11) 노동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2)', <http://laborstat.molab.go.kr> / 인쇄 · 출판 - 135만원, 조립금속 - 126만원, 기계금속 - 146만원, 가죽가방 · 신발 - 124만원

노동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52.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안정적인 일감의 확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8]은 93년과 2002년의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노동시간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본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8]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노동시간 추이>

단위 : 시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3년		202.1	204.5	209.0	208.7	208.8
2002년	193.3	197.0	202.5	209.4	201.5	195.2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 년도

○ 본 조사가 노동부의 통계자료보다 월평균임금에서는 낮게,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길게 조사된 것은 본 조사의 주된 대상이 [표5]과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에 달해 주 40시간 노동이 단계적 법제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주 48시간 노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수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인 일이다.

[표9] <토요 휴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유효		
주5일제	37	7.7
격주 휴무	52	10.9
매주 휴무	8	1.7
평일보다 일찍 퇴근 ¹²⁾	204	42.7
평일과 동일	158	33.1
합계	459	96.0
결측		
무응답	19	4.0
합 계	478	100.0

○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종 자료를 통해 노동시간이 약간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단순하게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측면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무리한

12) 평일보다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4시간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업체의 경우 토요일의 경우 오후 3시 퇴근 혹은 오후5시 퇴근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석이며 오히려 일감의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의 요인이 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2) 법정 및 기업 복지

○ 법정 수당·복지와 법정외복지¹³⁾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이하게도 법정 외복지 수혜율이 법적 강제¹⁴⁾가 되는 법정수당·복지의 적용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법은 무시하되 그 보상적 성격으로 밥값은 회사에서 내고 명절 때 약간의 떡값을 주고 연·월차 휴가를 주지 않는 대신 여름휴가 3~4일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10] <법정 및 기업복지 수혜율>

단위 : 명, (%)

항목	수혜가능	수혜불가	모름	항목	수혜가능	수혜불가	모름
퇴직금	316 (66.1)	127 (26.6)	29 (6.1)	식비보조	341 (71.3)	116 (24.3)	9 (1.9)
월차	114 (23.8)	324 (67.8)	26 (5.4)	하계휴가	378 (79.1)	74 (15.5)	15 (3.1)
연차	86 (18.0)	335 (70.1)	38 (7.9)	상여금	268 (56.1)	162 (33.9)	34 (7.1)
주휴	116 (24.3)	296 (61.9)	40 (8.4)	병가	129 (27.0)	252 (52.7)	72 (15.1)
시간외	209 (43.7)	241 (50.4)	11 (2.3)	생리휴가	24 (14.0)	121 (70.8)	15 (8.8)
휴업수당	66 (13.8)	311 (65.1)	73 (15.3)	출산휴가	24 (14.0)	105 (61.4)	31 (18.1)
육아휴직	22 (4.6)	292 (61.1)	104 (21.8)				

○ 특히 치명적인 것은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항목이다.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출근 시각은 정해져 있으나, 퇴근시각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43.7%의 응답자 가운데서도 정확히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부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야근 한번에 일만원 혹은 이만원' 하는 식의 '웃돈' 개념으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체의 현실이다.

13) 본 조사에서는 법정외복지로 식비보조, 여름휴가, 상여금, 병가(상병휴가)에 대한 조사만 하였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사업체마다 다양한 기업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례가 매우 적어 조사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법정외복지라고 생각되는 위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4) 근로기준법이 일부분만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체 응답자 27.6%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법정외복지 수혜율이 훨씬 높다.

[표 11] <복지 미수혜에 대한 원인 - 담당 직무별 응답분포>

단위 : 명, (%)

구 分	담 당 직 무									전 체
	고위 임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사업주 요구	4 (9.1)	0 (.0)	2 (10.5)	13 (18.1)	2 (8.3)	4 (19.0)	10 (16.7)	23 (18.7)	10 (16.9)	68 (16.0)
영세사업장 관행	21 47.7	0 (.0)	8 (42.1)	31 (43.1)	6 (25.0)	6 (28.6)	29 (48.3)	54 (43.9)	25 (42.4)	180 (42.5)
경영애로	7 (15.9)	1 (50.0)	0 (.0)	14 (19.4)	1 (4.2)	3 (14.3)	11 (18.3)	20 (16.3)	2 (3.4)	59 (13.9)
대체인력 부재	5 (11.4)	0 (.0)	5 (26.3)	8 (11.1)	4 (16.7)	2 (9.5)	1 (1.7)	10 (8.1)	9 (15.3)	44 (10.4)
사업주 무지	2 (4.5)	0 (.0)	2 (10.5)	3 (4.2)	4 (16.7)	3 (14.3)	3 (5.0)	5 (4.1)	3 (5.1)	25 (5.9)
기타	5 (11.4)	1 (50.0)	2 (10.5)	3 (4.2)	7 (29.2)	3 (14.3)	6 (10.0)	11 (8.9)	10 (16.9)	48 (11.3)
전체	44 (100.0)	2 (100.0)	19 (100.0)	72 (100.0)	24 (100.0)	21 (100.0)	60 (100.0)	123 (100.0)	59 (100.0)	424 (100.0)

○ 복지 수혜율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담당직무-고용형태-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영세사업장 관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영세사업장의 형편상 불가피성이나 다른 원인이 아닌 ‘관행’이란 응답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선 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한다.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관행’이란 인식 속에는 일종의 ‘어쩔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해서 고착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요구’라는 응답이 16.0%로 뒤를 잇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 다음 [표12]는 한국노총에서 소속 노동조합 중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법정 기업복지수급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¹⁵⁾ 동일한 조건의 사업체에서 본 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노동조합의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행’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다른 점을 시사하고 있다.

15)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복지욕구와 개선방안, 권나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2004년 2월

[표 12] <법정복지수급현황에 관한 한국노총 소속 사업체 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 단위:명, (%)

퇴직금	수혜불가	수혜가능	모 름
	본 조 사	127 (26.6)	316 (66.1)
월차휴가	한국노총	74 (14.6)	292 (57.6)
	본 조 사	324 (67.8)	114 (23.8)
연차휴가	한국노총	76 (15.0)	306 (60.4)
	본 조 사	335 (70.1)	86 (18.0)
주휴수당	한국노총	51 (10.1)	346 (68.2)
	본 조 사	296 (61.9)	116 (24.3)
생리휴가	한국노총	139 (27.4)	214 (42.2)
	본 조 사	121 (70.8)	24 (14.0)
출산휴가	한국노총	30 (25.6)	74 (63.2)
	본 조 사	105 (61.4)	31 (18.1)
육아휴직	한국노총	72 (61.5)	12 (10.3)
	본 조 사	292 (61.1)	22 (4.6)
	한국노총	75 (14.8)	5 (1.0)
	본 조 사	427 (84.2)	

※ 한국노총 자료는 2003년 10월 기준이며 우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무응답(모름) 비율이 다소 높음

(3) 사회보험

1) 사회보험 가입률

○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적으로 60%를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를 [표13]에서 나타내고 있다.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사회보험 가입률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를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56.2%와 55.4%로 나타나고 있다.

[표13] <사회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

국 민 연 금	전 장 보 험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가입	직장	249 (56.2)	가입	직장	242 (55.4)	가입	309 (64.6)	
	지역	33 (7.4)		지역	53 (12.1)	미가입	135 (28.2)	
	구분	34 (7.7)		구분	37 (8.5)	모름	24 (5.0)	
	무응답			무응답		모름	39 (8.2)	
소 계	316	66.1	소 계	332	69.5	합계	468	97.9
미가입	127	26.6	미가입	105	22.0	무응답	10	2.1

합계	443	92.7	합계	437	91.4	
무응답	35	7.3	무응답	41	8.6	

※ 팔호()안의 비중은 가입자 합계에 대한 비중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명, (%)

기업규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모름	가입	미가입	모름	
1인	7 (35.0)	13 (65.0)	10 (50.0)	10 (50.0)	2 (10.5)	13 (68.4)	4 (21.1)	3 (15.8)	13 (68.4)	3 (15.8)	
5인미만	57 (54.3)	48 (45.7)	63 (60.6)	41 (39.4)	49 (44.5)	50 (45.5)	11 (10.0)	49 (44.1)	52 (46.8)	10 (9.0)	
10인미만	72 (69.2)	32 (30.8)	78 (75.7)	25 (24.3)	74 (65.5)	30 (26.5)	9 (8.0)	75 (67.0)	34 (30.4)	3 (2.7)	
20인미만	100 (84.0)	19 (16.0)	100 (86.2)	16 (13.8)	97 (79.5)	20 (16.4)	5 (4.1)	103 (83.1)	18 (14.5)	3 (2.4)	
50인미만	74 (85.1)	13 (14.9)	75 (87.2)	11 (12.8)	66 (73.3)	17 (18.9)	7 (7.8)	72 (80.0)	15 (16.7)	3 (3.3)	

○ 이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의 월평균임금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적은 임금을 받는 것과 전산업 평균과의 비교 등으로 봤을 때 영세사업장에서는 기업복지 부문이 취약하면서도 사회보험 면에서도 취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한 사업체 규모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 조사와 복지확대 방안 조사

[표 15]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명, (%)

구 분	기 업 규 모					전 체	
	1인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50인 미만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	사업주 요구	1 (6.3)	20 (30.3)	9 (23.1)	9 (37.5)	8 (38.1)	47 (28.3)
	금액 부담	2 (12.5)	9 (13.6)	11 (28.2)	3 (12.5)	1 (4.8)	26 (15.7)
	개인사정	1 (6.3)	6 (9.1)	2 (5.1)	1 (4.2)	1 (4.8)	11 (6.6)
	사회보험불신	2 (12.5)	5 (7.6)	1 (2.6)	0 (0)	2 (9.5)	10 (6.0)
	잘 몰라서	4 (25.0)	9 (13.6)	9 (23.1)	2 (8.3)	5 (23.8)	29 (17.5)
	기타	6 (37.5)	17 (25.8)	7 (17.9)	9 (37.5)	4 (19.0)	43 (25.9)
전 체	16 (100.0)	66 (100.0)	39 (100.0)	24 (100.0)	21 (100.0)	166 (100.0)	

○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전 규모에서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가 사업주의 비협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 의사가 있어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소위 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즉,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무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문제 해결방안 - 직무별 분석>

단위: 명, (%)

구 分	직 무									전 체
	고위 임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중앙/지자체의 지원	23 (52.3)	2 (100.0)	17 (68.0)	39 (49.4)	14 (58.3)	19 (82.6)	22 (34.9)	53 (41.1)	29 (42.0)	218 (47.6)
사업주 감독강화	4 (9.1)	0 (0)	4 (16.0)	12 (15.2)	4 (16.7)	1 (4.3)	10 (15.9)	23 (17.8)	13 (18.8)	71 (15.5)
노·사 의식 변화	12 (27.3)	0 (0)	2 (8.0)	18 (22.8)	1 (4.2)	3 (13.0)	15 (23.8)	34 (26.4)	16 (23.2)	101 (22.1)
영세사업의 불가피성	5 (11.4)	0 (0)	2 (8.0)	6 (7.6)	4 (16.7)	0 (0)	14 (22.2)	16 (12.4)	9 (13.0)	56 (12.2)
기 타	0 (0)	0 (0)	0 (0)	4 (5.1)	1 (4.2)	0 (0)	2 (3.2)	3 (2.3)	2 (2.9)	12 (2.6)
전 체	44 (100.0)	2 (100.0)	25 (100.0)	79 (100.0)	24 (100.0)	23 (100.0)	63 (100.0)	129 (100.0)	69 (100.0)	458 (100.0)

○ 법정 복지·수당, 법정외 기업복지, 사회보험 가입률 낮게 나타나는 문제 -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개별 사업체별로는 해결방안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결과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를 차지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노사관계

1) 노동조합 조직률

○ 기업규모별 노조 조직률에 대해 추계를 한 자료¹⁶⁾에 의하면 50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약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본 조사에서는 ‘이미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6.5%에 이르는데 이는 ‘공동실태조사단’ 참가 노조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 5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과 결정과정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조사는 매우 미흡하지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불균형적인 것이며 이를 집단의 특성과 처지가 노동·복지 정책에 반영되기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일례로 앞의 [표12]에서 보는 봄과 같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에서 법정복지 적용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노동복지의 확대에 노동자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를 집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및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복지 확대와 정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 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편 양대노총 및 산별노조에 있어서도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2)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조사

○ 응답자들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노동부(36.2%)와 노동조합(25.3%)의 순으로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불이익시 도움 요청 기관>

구 분	응답자수(명)	비중 (%)
주요 상담처	회사관리자	56
	직장동료	56
	노동조합	121
	시민단체	22
	노동부	173
	노무사 및 변호사	16
	기타	27
	소계	471
무 응답	7	1.5
합 계	478	100.0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문제를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노동부’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과거에 비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많이 개선된 점과 노동조합에 상담을 하더라고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시정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서류 등을 준비해서 노동부 혹은 노동위원회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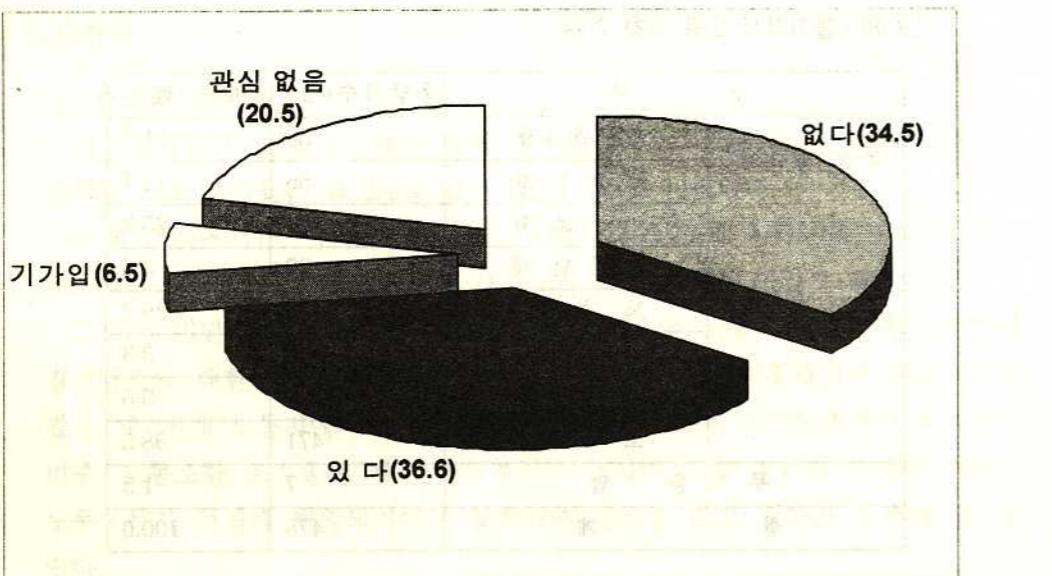
○ 상담 우선순위는 각 요인별로 -고용형태별, 성별, 규모별, 직무별, 연령별- 차이 없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 다음은 노조가입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표19] <노조 가입의사 여부>

구 분	응답자수(명)	비중 (%)
노조 가입 의사	없 다	165
	있 다	175
	기 가 입	31
	관심 없음	98
	소 계	469
	무 응답	9
합 계	478	100.0

16) KLI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 중소영세업체 노동조건 실태, 김유선, 2004년 2월, 재인용



○ 현재 노조 조직률이나, 50인 미만 사업체의 법정복지 미준수의 원인이 '관행'에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가입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6.6%에 이르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입의사가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모든 요인별 분석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내고 있다.

[표20] <미가입 사유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연 령 구 간						소 계
	30세미만	35세미만	40세미만	45세미만	50세미만	50세이상	
가입자격 없음	2 (5.7)	2 (5.7)	3 (8.3)	6 (20.0)	3 (13.6)	4 (17.4)	20 (11.6)
노조에 대한 불만	3 (8.6)	3 (8.6)	5 (13.9)	3 (10.0)	4 (18.2)	2 (8.7)	20 (11.6)
주위의 만류	0 (0.0)	2 (5.7)	3 (8.3)	2 (6.7)	0 (0.0)	0 (0.0)	7 (4.1)
사용자의 만류(간접)	0 (0.0)	2 (5.7)	4 (11.1)	2 (6.7)	0 (0.0)	2 (8.7)	10 (5.8)
필요성 못 느낌	29 (82.9)	23 (65.7)	17 (47.2)	1 (33.3)	13 (59.1)	10 (43.5)	93 (54.1)
기 타	1 (2.9)	3 (8.6)	4 (11.1)	7 (23.3)	2 (9.1)	5 (21.7)	22 (12.8)
합 계	35 (100.0)	35 (100.0)	36 (100.0)	3 (100.0)	22 (100.0)	23 (100.0)	172 (100.0)

○ 이러한 결과는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의 관행'이라는 응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개별적인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굳이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상담과 조력을 얻어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노동조건의 개선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의 반증이라 보인다.

○ 특히 이러한 인식은 연령이 젊은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표 18]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는 노조 조직률과 연동되어 노동조합의 경험이 없는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노조 미가입 임시직 노동자 중 20%는 가입자격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나타내고 있다.

3. 소 결

본 조사의 가장 큰 의미는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단순 통계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진단과 이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찾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안정, 법정수준의 노동조건 개선과 영세사업체에서 기업복지의 한계를 사회복지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 수치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면서 중소·영세사업체의 대부분은 살아남기에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우리끼리는 안 되겠으니 정부가 좀 나서달라. 사회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본 조사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인 것이다.

(1) 중소영세사업체의 구조적인 고용불안

10명 중 3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을 옮긴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이들 10명 중 7명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했다. 본 조사에 응답을 한 이들은 이렇게 항상적이고 구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라도 실업층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경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5. 31영세자영업자 대책'이었다. 경쟁력이 없는 업체의 퇴출로 대변되는 이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¹⁷⁾

17) 한겨레신문 6월 5일자.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음식숙박업과 이·미용업에

2002년 현재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체의 69.3%에 이른다.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에서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 34.2%에 이른다. 노동자의 임금이 거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감안하면 영세사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노동자의 삶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 영세 제조업종 보호육성방안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노동복지)을 위한 첫 단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경쟁력 없는 업체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도급에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금융지원 대책 △시장개방과 외국 제품 수입에 따른 대책 △공장·점포 입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복지 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산재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 △환경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 △공동조합 구성 등에 관한 지원 등이 현장에서 쏟아지는 목소리의 대강이다.¹⁸⁾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영세사업체가 붕괴되는 것에 비하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더라도 훨씬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지역단위 영세산업정책 및 노동고용 정책 협의기구 설치

영세사업체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여기저기 쫓겨 다니면서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그 대표적인 원인은 땅값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각종 규제 때문이다. 본 자료집 “50인 미만 중소·영세 제조업 사업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값싼 임대료, 좋은 작업환경을 보장하는 공장단지 조성’이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제조업을 배제하고 개발(예: 서울에서의 ‘뉴타운’ 등)을 통한

전문자격증 및 신고제 도입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 운송업자, 재래시장 등의 퇴출 등을 대표적인 졸속 대책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 이글은 영세사업체의 노동조건과 실태에 관한 조사에 한정하였기에 영세·중소 제조업에 대한 보호 육성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집의 “50인 미만 중소영세제조업 사업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19) 본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일터와 삶터가 자꾸 멀어지는 경향을 띠고 혹은 공장을 따라 이사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장은 값싼 땅을 찾아 이전하고 공장이 있던 곳은 개발되어 집값이 올라 결국 노동자들도 공장 근처로 이사를 하고 따라서 공장 부근의 저소득 서민층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형성되는 – 빈부격차가 지역적 격차로 고정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땅값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안은

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영세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이러한 지원은 결국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했을 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혹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혜택 내지는 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²⁰⁾

③ 이와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중소·영세제조업 산업·고용정책 협의기구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 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구인구직 정보제공 서비스

아울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장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고용안정센터’로 대표되는 공공취업알선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만 경력과 기능을 가진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구직 활동은 실업자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노조 등 업종별로 오랜 기간동안 현장과 함께 호흡한 단체나 실업자 지원단체 등 노하우가 축적된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취업알선서비스가 될 것이다.

② 임금체불전력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업체는 기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열람을 통해 주택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법 위반 전력을 상업등 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20) 이와 관련한 예로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부가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입안했다. 그러나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노동자들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사업주의 이윤으로 남겨져 택시노동자가 분신까지 이르는 사태를 경험한바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우선지원 기준) 3항은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장내 노동조건 개선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의 처지는 대략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관계법의 미적용 사각지대, 사회보험 가입 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 수혜 미흡'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바로 노동관계법의 준수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다면 사업장내 노동조건 개선 즉,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크게 나누어 외부적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주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리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건이 50-60건에서 심한 경우 120건에 이르게 하는 것은²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임금노동자 보호임무방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근로감독관 증원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아울러 관리감독 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의 업무는 임금체불 청구 사건에 국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채권추심 기관' 그것도 '채권만 확인해 주는' 정도의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²²⁾

본 조사에서 복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영세사업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은 근로감독관 설문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일선 노동조합활동가들의 진단이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인식의 전환과 주무부서로서 노동부의 정책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수천명을 증원해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2)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명예근로감독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벌써 몇 해 전부터 있어왔다. 그 활동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유사한 제도로서 '명예환경감시원'²³⁾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²⁴⁾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명예근로감독관'은 넘지 못할 산처럼 남아 있다.

이유는 사용자 단체의 극심한 저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명예근로감독관제

21) 2005년 3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방노동청 정례협의회에서 근로감독과장의 발언

22) 임금채권의 확인도 이제는 제한되고 있다. 과거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입류 협조 공문'을 발급 받으면 법원에 무공탁 가입류를 신청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에서 '무공탁 가입류 협조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들이 공탁금을 걸고 소송을 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노동부의 임금채권 확인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도 도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장경제왜곡법안'으로 분류를 한 예도 있다.²⁵⁾

명예근로감독관제도의 도입은 적발과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에서 노사간에 자주적인 노동조건개선의 조력자로서 교육과 예방적 활동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3) 임금시효의 연장과 포괄산정임금제 등의 엄격한 제한

① 임금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

체불임금만큼 노동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있어서 체불임금은 지불하여야 할 금품중 가장 후순위인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지역노조 활동가들에 의하면 체불임금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다음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사용자는 본 예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상의 일반채권은 10년의 시효를 갖는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급료 등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²⁶⁾를 두어 노동법에서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민법은 사유재산을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볼 때, 이 법으로 노동자의 임금 시효를 일반채권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노동법은 이 민법을 근거로 한다면 노동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모든 것'이다. 명절 전에만 '체불임금 청산' 등 호들갑을 떨 것이다 아니라 법 개정으로 임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② 포괄산정임금제의 엄격한 제한

노동현장에서 임금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다. 본 조사에서 시간제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조사되었으나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자는 43.7%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그렇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하면 처벌을 받을까? 현실은 거의 그렇지 않다. 이 기막힌 모순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포괄산정임금제이다.

포괄산정임금제란? 근로형태·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계산이 곤란하거나 재량의 여

25) 한국경제신문 2003년 3. 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 56건을 친노동계 또는 친기업 등 6개 기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친노동계 법안이 총 35건으로 친기업 법안4건에 비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왜곡법안의 경우 파견근로자 고용 간주 및 신규 고용 금지기간을 설정한 파견법 개정안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한 의원은 총 45명에 달했다고 한다."

2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가 많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일부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임금개념인데, 대법원 판례²⁷⁾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원칙적인 임금계약에 대한 예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정립된 이후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조차 이 판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또 그 규모가 작을수록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는 거의 없다. 통상 '월급여가 얼마나'라는 것만 합의되면 노동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맺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8시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하면 임금계약 당시 1일 8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계약을 해 '포괄산정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자가 43.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로 인한 처벌 건수는 미미한 것이다.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시간의 계량이 어려운 노동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다. 일반적 제조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포괄산정임금제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월급여 일정액을 지급하면 주당 50시간을 일을 시키던 80시간을 일을 시키던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주40시간제가 아니라 30시간제 법제화를 해도 전혀 쓸모가 없게 된다.

4)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²⁸⁾ 엄격한 적용

위와 같은 문제를 다소 개선하고 노동계약엔 법적 준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환기 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손쉽고 간단한 것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고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활용해 전파와 지도를 한다면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노동조합 조직율의 제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1) 정부와 사용자의 인식전환

법정수준의 근로조건 개선을 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동조합을 통한 방법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의 결림들은 사용자의 전횡은 둘째치더라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언론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렇잖아도 국제적으로 천민자본주의라는 평을

27) 대판 1983.9.13, 82다카49

28)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115조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고 있는 우리 사회 사용자 집단에게 노조 불인정의 명분을 주고 있다. '무노조경영'이라는 해괴한 범죄적 용어가 칭송을 받는 도착(倒錯)적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2)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법원 설립

노동조합의 결성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개입, 단체협약을 맺고도 지키지 않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장기분규사업장이나 불법파업(?)은 절반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노동위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협의도 없는 사용자를 노동자들이 시시때때로 부당노동행위자로 몰고 간다는 것인가?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노·사·정이 모두 잘 알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노동법원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내야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3) 노동조합 조직의 의사수렴 과정에 대한 개선

반면 노동조합 조직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전체 노동자 구성에서 5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가 약 70%에 이르지만 노동조합 내에서 이들은 과연 몇%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의사수렴과정에서 충분하고도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를 냉정히 평가해 봄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에도 흠결이 생기기 때문이다.

(4) 사회보험료율 개선 등 지원대책 마련

최근 몇 년간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기업규모 별 분석에서는 또 다른 차별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보험의 빈곤층, 차상위계층(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있다면 영세사업장에서의 사회보험가입률 제고가 가장 최우선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영세사업주나 노동자들의 요구는 '사회보험은 가입하고 싶지만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어 버리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니 정부에서 좀 도와 달라'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정책 - 노동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당사자(수혜자) 참여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적은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복지전

달체계에서 '깨진 바가지 물새는 것' 같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은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영세노동자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과 건강실태

대표집필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1) 작업장 유해환경 노출 실태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유해환경은 무엇이고, 본인이 느끼는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을 때, 반복작업에 노출되고 있는 이들이 63.2%로 가장 많았고, 분진에 노출되고 있는 이들이 60.9%,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이들도 58.2%로 절반이 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반복작업,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전통적인 건강상의 유해요인이 많은 작업장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본인이 생각하기에 심각하다고 느끼는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해광선, 유기용제, 중량물 순으로 위험이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은 노출되고 있는 이들은 많았지만,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노출빈도가 높은 반복작업,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사업과 더불어 주관적 심각도가 큰 유해광선, 유기용제, 중량물 등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요인 및 그것에 대한 주관적 심각도

항목	있음		없음
	심각도		
유기용제	61 (33.7)	2.27	276 (57.7)
화학물질	65 (13.6)	2.16	373 (78.0)
고(저)온	138 (28.9)	2.12	301 (63.0)
유해광선	57 (11.9)	2.29	375 (78.5)
진동	146 (30.5)	2.19	290 (60.7)
소음	278 (58.2)	2.11	171 (35.8)
중량물	172 (36.0)	2.25	263 (55.0)
반복작업	302 (63.2)	2.15	139 (29.1)
불편한 자세	177 (37.0)	1.98	260 (54.4)
위험한 기계	166 (34.7)	2.08	273 (57.1)
분진	291 (60.9)	1.93	152 (31.8)

* 심각도는 '매우 심각'-3점, '심각한편' - 2점, '별로 심각하지 않음'- 1점으로 계산.

2) 작업환경 개선 어려움의 이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37.4%가 비용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29.8%가 사업주의 개선 의지 부족을 꼽았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주의 개선 의지를 복돋울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2] 작업환경 개선 어려움의 이유

구분	응답 수(%)
사업주 의지 부족	125 (29.8%)
비용 부담 과다	157 (37.4%)
잘 모름	41 (9.8%)
건물 임대로 인한 제약	44 (10.5%)
기타	53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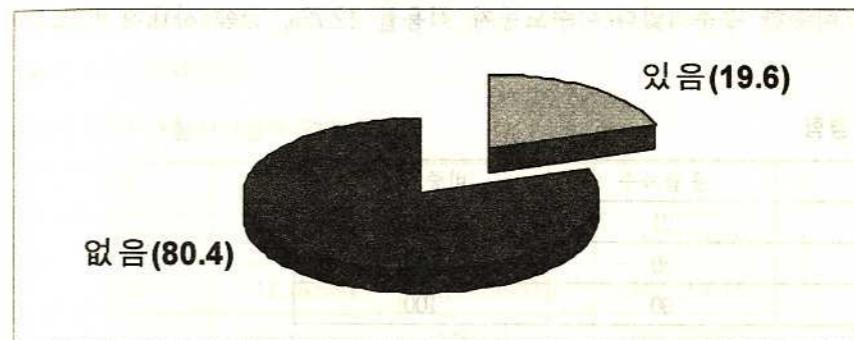
3)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경험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19.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친 이들은 약 5년

여 동안 평균 1.86회 정도 다치거나 병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경험

구분	응답자수	비중 (%)
있음 (평균 1.86회)	92	19.6
없음	377	80.4
합계	469	100



이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고, 질병 경험률이 29.3%로 가장 높았고, 인쇄, 출판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제화 노동자들의 사고, 질병 경험률도 20.9%로 높은 편이었다.

[표4] 업종별 사고, 질병 경험

구분	있음	없음	전체
금속	17 (29.3%)	41 (70.7%)	58 (100.0%)
인쇄, 출판	27 (20.9%)	102 (79.1%)	129 (100.0%)
제화	9 (20.9%)	34 (79.1%)	43 (100.0%)
기타	39 (16.3%)	200 (83.7%)	239 (100.0%)

이주노동자들²⁹⁾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산재를 경험하는 비율이 32.3%로 조사되었고, 금속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³⁰⁾이 3.1년 동안 19.6% 정도가 산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조사대상자의 경우 이주노동자보다는 산재를 덜 경험하였지만, 금속 사내하청 노동자보다는 산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거의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들

29) 설동훈 등.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30) 금속산업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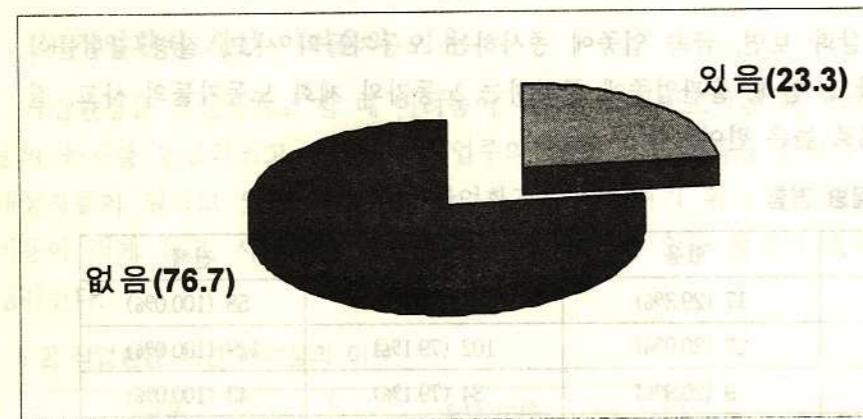
은 산재에 있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신청 여부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조사대상자의 23.3%에 불과하였다. 이것을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주노동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 금속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이주노동자 적용률 12.7%, 금속 사내하청 노동자 적용률 21.9%).

[표 5] 산재보험 적용 경험

구분	응답자수	비중 (%)
있음	21	23.3
없음	69	76.7
합계	90	100



5)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들이 40.3%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이들은 19.4%였다. 그리고 사업주 강요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11.3%나 되었다.

[표 6]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구분	사업주 강요	해고 위험	회사 보상	가벼운 사고, 질병	귀찮아서	잘 모름	기타	계
응답수 (%)	7 (11.3%)	4 (6.5%)	8 (12.9%)	25 (40.3%)	1 (1.6%)	12 (19.4%)	5 (8.1%)	62 (100.0%)

6) 연간 대형사고중독 경험률

연간 입원하여 치료 받을 정도의 사고나 중독에 대한 경험 유무를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8.2%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 보면, 남성은 9.1%, 여성은 6.5%가 지난 1년간 대형사고를 경험하였다. 이는 2001년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상 남자는 1.59%, 여자는 0.98%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남성은 우리나라의 일반인구보다 5.7배, 여성은 6.6배나 더 크게 다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연간 대형사고중독 경험률

구분	있음	없음	계
남성	27 (9.1%)	270 (90.9%)	297 (100.0%)
여성	11 (6.5%)	158 (93.5%)	169 (100.0%)
계	38 (8.2%)	428 (91.8%)	466 (100.0%)

7) 지난 2주간 경미한 사고중독 경험률

지난 2주 동안 큰 사고 외에 통증이 있거나 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11.9%가 경험이 있었고, 남성은 12.9%, 여성은 10.1%가 지난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경미한 사고나 중독의 경험이 있었다. 이는 일반인구 집단에서 남성의 경우 0.55%, 여성의 경우 0.40%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23.5배나, 여성의 경우 25.3배나 더 많이 다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8] 지난 2주간 경미한 사고중독 경험률

구분	있음	없음	계
남성	39 (12.9%)	264 (87.1%)	303 (100.0%)
여성	17 (10.1%)	152 (89.9%)	169 (100.0%)
계	56 (11.9%)	416 (88.1%)	472 (100.0%)

8) 연간 만성질환 유병률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전체의 11.1%, 남성의 12.0%, 여성의 9.5%가 지난 1년간 만성질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 수준에 비하여서는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26.2%, 여성 25.3%). 이는 상대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건강한 집단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결과인데, 일반적으로 노동자집단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건강한 것으로 조사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볼 때, 자연스런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9] 연간 만성질환 유병률

구분	있음	없음	계
남성	36 (12.0%)	265 (88.0%)	301 (100.0%)
여성	16 (9.5%)	152 (90.5%)	168 (100.0%)
계	52 (11.1%)	417 (88.9%)	469 (100.0%)

9) 연간 급성질환 경험률

지난 2주간 아파서 치료받은 경험 유무를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14.0%, 남성의 14.0%, 여성의 14.1%가 지난 2주 사이에 급성질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남성 8.78%, 여성 10.21%).

[표 10] 연간 급성질환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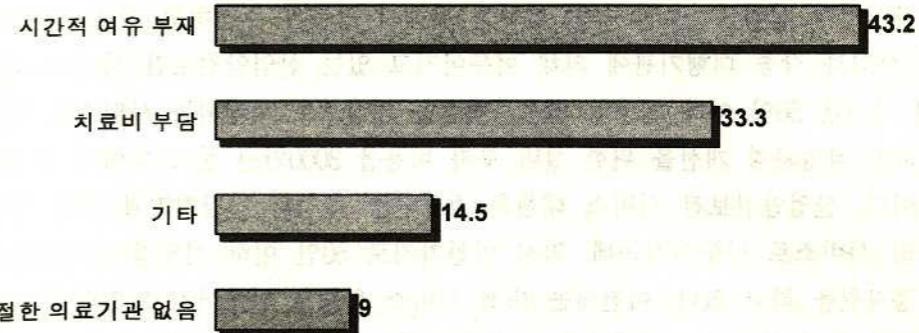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계
남성	42 (14.0%)	258 (86.0%)	300 (100.0%)
여성	24 (14.1%)	146 (85.9%)	170 (100.0%)
계	66 (14.0%)	404 (86.0%)	470 (100.0%)

10) 병의원 이용시 느끼는 어려움

병의원 이용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43.2%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치료비가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33.3%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긴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의료이용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1] 병의원 이용시 느끼는 어려움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치료비 부담	151	33.3
시간적 여유 부재	196	43.2
적절한 의료기관 없음	41	9.0
기타	66	14.5
계	454	100



2. 소 결

조사대상자들은 반복작업, 분진, 소음 등의 유해환경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다. 산재를 경험한 비율을 보면 이주노동자들보다는 산재를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중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금속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재를 당하였어도 그 중 1/4 정도만이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사고가 경미하여서라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하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아서,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에 걸리거나 걸려있는 이들은 일반인구집단보다 적지만, 급성질환이나 사고 경험률은 일반인구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이들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건강한 이들이긴 하지만, 사고는 더욱 자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경험률이 적은 것은 이들이 병의원에 갈 시간이 부족하여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3. 정책 대안

1) 기본 전제

①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업은 클린 사업과 각종 대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대행이다. 클린 사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대행은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 등 보건관리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행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2001년 말 이후부터 클린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시행정 또는 형식적 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영세사업장 현실과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 사업주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과 그 개선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업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일반 안전보건 문제가 지역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만큼, 일반 보건 문제도 직장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지역 수준에서 산업보건 서비스와 일반 보건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구체적 정책 제언

① 노동자가 참여하는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라

정부와 사업주만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하여 그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킬 여지가 있는 사업에 정부의 재정을 투여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 운영하여 다른 지역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 단위 혹은 산업 단위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업 혹은 교육 사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여 이를 육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로 노동조합과 전문기술지원 단체 혹은 노동조합과 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작업장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극 재정을 투입하여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몇몇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재정 문제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에 일반 보건의료와 산업보건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공공적' 지역보건센터를 설립하라.

현재 민간기관에 의해 대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그 이윤 동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실해질 여지가 늘 상존한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에 그러한 서비스를 담당할 공공보건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공공보건센터에서는 정기적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공장 방문 진료, 일상적 건강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진료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등에 그러한 역할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형태는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③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보다 권한과 지원이 확대된 제도가 필요하다.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을 그 권한과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역에서 실제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역 단위로 그 지역에 속한 공장의 안전과 보건 상황을 점검하는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의 활동을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전임 활동비뿐 아니라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실직자의 노동복지 실태 및 요구

대표집필 : 김성기 /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1. 조사개요

1) 조사 방법 및 결과분석

○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분석 등의 조사관련 내용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실태조사' 부분을 참고하라.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조사 분석 결과는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노동 및 복지 관련 실태 조사'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추가로 사업자 관련 부분은 별도로 분석 정리하였다.

2) 조사목적

○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복지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여 사회적 개선 방안과 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주거문제, 의료문제, 보육 및 교육 문제, 노동상담·직업훈련 등의 노동관련 복지서비스와 사업자를 위한 고용 지원 등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의 대상지역인 중소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의 노동복지, 보건의료,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노동복지 문제는 개별 기업 내에서 풀어가기에는 한계적이다. 노동운동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정부차원의 해결과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노동운동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운동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노동운동 진영은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

○ 참여정부의 노동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소영세 사업체 노동자와 사업자의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체의 지불능력은 본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상당히 취약하다. 이는 정부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기업복지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회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이는 본조사의 대상이었던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실직노동자, 중소영세사업체 사업주에 대한 3가지 실태조사에서 공히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노동복지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대한 이해

1) 노동복지에 대한 이해

○ 박찬임은 '근로복지는 근로와 연계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에서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공주체에 따라 공공근로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부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근로복지는 근로복지의 제공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광범위하게 보자면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퇴직금 등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지급을 강제하는 형태를 띠는 제반 급여와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각종 근로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반면, 기업복지는 기업이 제공주체가 되어 당해 기업 내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임금 이외의 복지적 개입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복지적 개입이란 법률을 통해서 기업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한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 자주복지 는 노동조합이나 자치회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 '감정기'는 노동복지 관련 정책 영역에 대해서 ①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적 노동조건을 구성하는 임금과 기업복지 등에 관한 정책 즉 노동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 ② 노동활동 과정상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과 보건의 정책 ③ 노동력의 재생산과정과 관련되는 사회생활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물가, 조세제도 및 재산형성제도와 관련된 정책 ④ 안정된 고용이 안정된 소득과 생활을 보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장에 관한 정책 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행하는 자주적 성격의 복지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 ⑥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집단, 즉 아동이나 여성 혹은 장애상태의 노동자 등에 대한 각종 정책 ⑦

이상의 제반 사항들이 노동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동 3권에 관한 정책 ⑧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기구나 시설 혹은 설비 등을 갖추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법정 용어인 '근로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노동자 주체의 개념을 살려 '노동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즉, 노동복지란 노동자의 노동영역에서 필요한 제반 복지적 요소들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는 '노동복지'의 영역은 주로 정부의 공공근로복지 정책에 해당하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반 급여와 각종 노동복지관련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실태조사와 관련해 중심적으로 살펴볼 영역은 노동활동 과정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고용, 교육, 보육, 의료, 복지지원 등이다.

한편, 사회보험의 영역은 앞장의 '중소영세노동자 노동 실태조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하지 않았다.

2)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대한 이해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박찬임. 2002)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가가 시민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근로유인을 강화시켜서 노동을 통한 복지획득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구상인 것이다. (박찬임. 2002)

또한 이 법에서는 중소영세기업 근무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 장기근속 노동자를 우대해야 한다고 하여 근로복지정책의 목적과 공공근로복지의 주된 대상을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매 5년마다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

영, 근로자 복지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주거정책, 근로자복지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등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취약 실업자 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정책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노동복지 및 고용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2.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

(1) 조사응답자의 노동 조건의 실태

1) 조사응답자의 임금 및 노동 시간 실태

○ 조사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은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의 절반수준이다. 따라서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상당한 저임금 상태에 처해 있다.

○ 조사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주40시간 노동이 법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 따라서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및 저임금 상태의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소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2) 조사응답자의 고용 불안정성

○ 사업주 실태조사결과에서 확인 됐듯이, 실제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20%대에 불과한 것에서도 확인이 된다. 또한 변형된 고용형태인 소사장제나 도급제의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8%인 147명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이 잦은 중소 영세 사업장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주요 이직 사유는 사업장 폐업,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의 노동조건과 저임금이 주된 이직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폐업 등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이 32.7%에 이르며 그 외에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이직률이 38.1%에 이르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영세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상시적 고용불안정에 처해 있으며, 이는 영세사업의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와 중소영세사업체의 취약한 지불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2) 조사응답자 가구의 경제 및 주거 등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 가구 현황은 전체 응답자의 60.5%가 3인-4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결혼 비율은 약 65% 이었다. 가구 소득은 51% 가량이 2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응답자의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응답자의 가구원 수와 가구 소득 수준 비교

구분	총가구원수					전체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가구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 (17.6%)	7 (14.9%)	23 (19.2%)	6 (3.7%)	7 (8.8%)	52 (11.3%)
	200만원 미만	33 (64.7%)	22 (46.8%)	57 (47.5%)	50 (30.0%)	24 (30.0%)	186 (40.3%)
	300만원 미만	6 (11.8%)	9 (19.1%)	29 (24.2%)	69 (42.1%)	24 (30.0%)	137 (29.7%)
	400만원 미만	2 (3.9%)	9 (19.1%)	6 (5.0%)	23 (14.0%)	12 (15.0%)	52 (11.3%)
	500만원 미만	1 (2.0%)	0 (.0%)	4 (3.3%)	7 (4.3%)	7 (8.8%)	19 (4.1%)
	500만원 이상	0 (.0%)	0 (.0%)	1 (.8%)	9 (5.5%)	6 (7.5%)	16 (3.5%)
전체		51 (100.0%)	47 (100.0%)	120 (100.0%)	164 (100.0%)	80 (100.0%)	462 (100.0%)

자녀가 있는 3인-5인 가구 중 3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가 3인 가구에서 90.9%, 4인 가구에서 76.3%, 5인 가구에서 68.8%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 가계조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2005년 2/4분기 전체 도시가구의 월 평균 경상 소득 금액³¹⁾이 29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답자의 81.3%는 전국 평균 금액 이하의 가구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 주거 실태

○ 조사응답자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조사 응답자의 71.7 %는 전, 월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

31) <전국 도시가계 경상소득 - '05. 2/4분기>

구분	가구원수					전체 평균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월 평균 소득금액	-	235만원	294만원	327만원	337만원	299만원

* 경상소득 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공·사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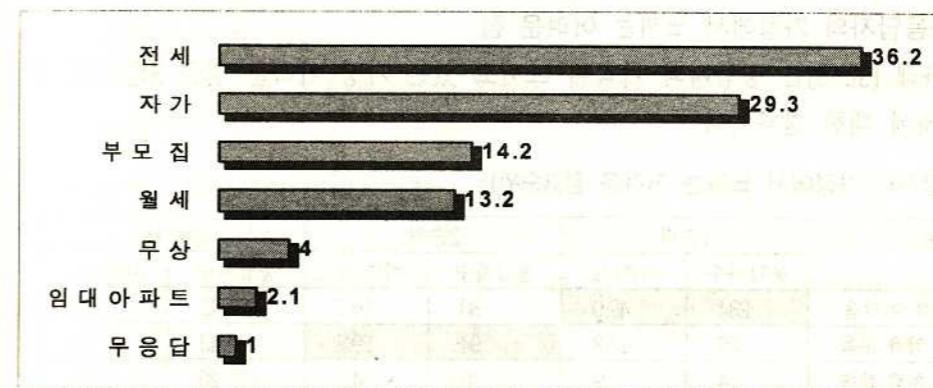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KOSIS.

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세 거주자는 36.2%이고, 월세 거주자는 13.2%였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9.3%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의 보증금은 평균 5,675만원 이었으며, 월세 평균은 27만원에 달하였다.

○ 통계청의 2004년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소유가구 비율은 62.9%이며, 주택구입자금 마련 방법은 50.5%가 저축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에 필요한 소요 연수는 10.1년이다.³²⁾

더구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2005년 9월 22일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아파트 33평형은 30년, 25평형은 23.2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그는 또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평균 53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급쟁이가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나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평생 어렵다”고 지적하였다.(한겨레신문, 2005년 9월 23일자)

[그림-1] 조사응답자의 주거 현황



[표-2] 도시근로자 가구 아파트 장만 소요기간

구분	전국	서울	전체	강남구
	2003년 2월	13.5년	20.8년	29.5년
25평형	2003년 8월	14.3년	23.2년	37.3년
	2003년 2월	16.6년	24.8년	34.3년
33평형	2003년 8월	17.7년	30년	43.3년

* 자료: 이낙연 의원

○ 따라서 본 조사에 나타났듯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대의 저임금 상태에 처해있는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거의

32) 통계청, 2004년, ‘주택소유현황조사’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세 보증금도 6,000만원이 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실로 버거운 일일 것이다.

하기에 중소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정부의 주택자금 구입 및 융자를 위한 기준을 완화하여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성수동'이나 '을지로' 같은 중소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3.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보건복지 실태 및 욕구

1) 조사응답자의 고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1) 조사응답자의 가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 아래 [표-3]은 응답자와 가족이 느끼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을 3순위로 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표-3] 조사응답자의 가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3순위)

구 分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애로사항	경제적 어려움	234	49.0	80	16.7	42	8.8
	자녀 양육, 교육	66	13.8	94	19.7	43	9.0
	질병 치료, 간병	14	2.9	20	4.2	26	5.4
	부모 부양	7	1.5	32	6.7	20	4.2
	주거문제	37	7.7	75	15.7	43	9.0
	일자리 불안	52	10.9	74	15.5	108	22.6
	문화활동 부족	33	6.9	52	10.9	107	22.4
	가족 문제(갈등)	11	2.3	9	1.9	14	2.9
	기타	6	1.3	4	.8	6	1.3
	결혼	6	1.3	7	1.5	14	2.9
	합계	466	97.5	447	93.5	423	88.5
	무응답	12	2.5	31	6.5	55	11.5
합계		478	100.0	478	100.0	478	100.0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1순위에서 4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3순위에서는 일자리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래[표-4]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1-2-3순위 고르게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일자리 불안 문제-주거문제-문화활동 부족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고 각 순위별로 응답자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각 순위별 응답 상위 3가지 분포

구분	자녀 양육	일자리 불안	주거문제	문화 여가
1순위 응답	13.8%	10.9%	7.7%	-
2순위 응답	19.7%	15.5%	15.7%	-
3순위 응답	9%	22.6%	9%	22.4%

중소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면,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주거문제-일자리불안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문제는 중소 사업장내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동복지 지원이 절실힘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해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응답자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 '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복지 해결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47.6%, '노-사의 인식변화'에 22.1%,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15.5%, '관행상 불가피'에 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약 50%가 영세 노동자의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 장기적인 경기 침체, 중국산 제품의 유입, 기술력 정체 등으로 국내 중소 영세 제조업종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은 복지 문제 해결을 개별 기업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 복지 정책은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할 수도 있다. 5인 미만의 인쇄, 금속, 제화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한 업체의 경우 개별 기업에게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정책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2) 조사응답자의 가정에서 요구되는 공공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 교육 및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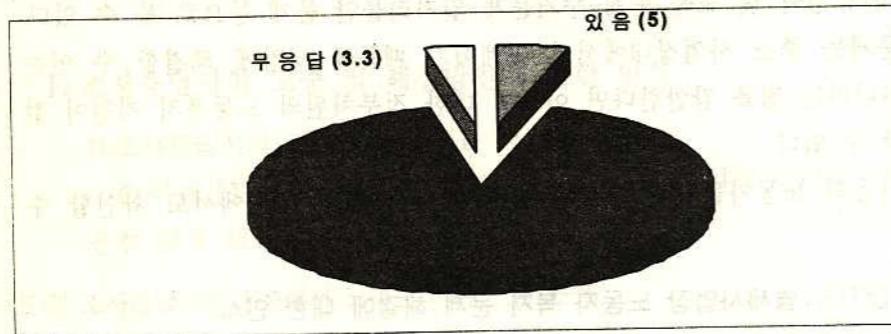
응답자의 사업장이나 생활지역에 있는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보육·노인복지·가정상담 등의 복지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였다. 그 중 여기서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조사응답자의 공공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① 공공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 조사응답자의 방과후학교 등 아동 복지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조사응답자의 방과후 아동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결과 방과 후 아동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유경험자는 설문 응답자의 5%인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50%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기관은 동 자치센터, 지역복지관, 종교단체, 지역시민단체 등이었다.

○ 또한 '이용 경험이 없는 조사응답자'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만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확인한 실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요 요인별 아동복지 서비스 미이용 사유 (초등학교생 가구만을 대상)

구분	방과후 아동서비스 미이용 사유						전체
	적당한 기관 부재	사설 학원 이용	정보 부재	돈이 없어서	해당 없음	기타	
전체	22 (28.6%)	21 (27.3%)	19 (24.7%)	7 (9.1%)	5 (6.5%)	3 (3.9%)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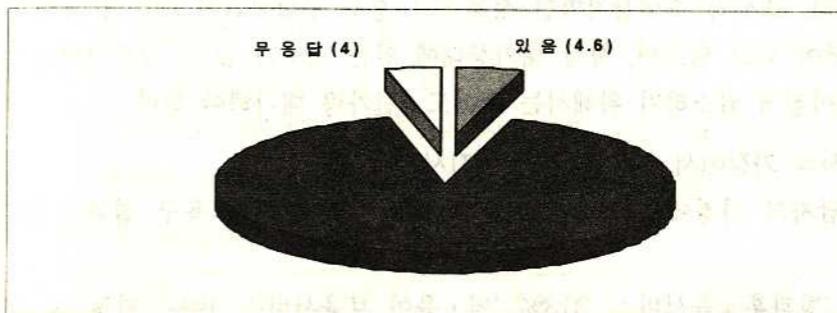
조사결과, '적당한 기관 부재' 28.6%, '정보 부재' 24.7%, '사설학원 이용' 27.3%, '돈이 없어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학원에 보내는 27.3%를 제외한 나머지 70% 이

상의 초등학교를 둔 가정에서 방과 후에 적절한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②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 조사응답자의 보육 복지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조사응답자의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조사 결과 보육 서비스 이용 또한 응답자의 4.6%인 22명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관은 구립 및 지역, 직장 보육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용 경험이 없는 조사응답자' 중 미취학 자녀(유아)를 둔 가구만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확인한 실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공 보육 서비스 미이용 사유 - 유아가구만을 대상

구분	보육 서비스 미이용 사유								전체
	적당한 기관 부재	대기자 많음	퇴근 시간 불일치	가족이 돌봄	정보 부재	돈이 없어서	해당 없음	기타	
전체	14 (19.7%)	8 (11.3%)	7 (9.9%)	7 (9.9%)	15 (21.1%)	3 (4.2%)	14 (19.7%)	3 (4.2%)	71 (100.0%)

조사결과, 현재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보 부재' 21.1%, '적당한 기관 부재' 19.7%, '해당없음' 19.7%, '대기자 많음' 11.3%, '퇴근시간 불일치' 9.9%, '가족이 돌봄' 9.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한 경우는 현재 사설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

○ 현재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 총 77명 중에서 공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 결과만으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앞서 '공공 및 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22명이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이 경우는 과거 경험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현재 공공 및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응답 중에 '대기자 많음'에 11.3%가 있었다. 구립 또는 시립 등의 공공보육 시설 이용 희망자가 많은 반면, 시설 수는 적어, 입소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의 주대상지역인 성동구의 경우 구립어린이집이 각 동마다 1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성동지역에서도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가량 대기해야 한다.

2) 조사응답자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 조사응답자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결과는 [표-7]과 같다.

조사결과, '방과후교육서비스' 20.3%, '영·유아 보육서비스' 19%, '가정 및 생활상담서비스' 19.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3.4%, '기타' 19%, '무응답 9%' 등으로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비슷한 양상으로 욕구가 나타났다. 여기서 '무응답'이 많은 경우는 혼자 사는 독신가구(1인)들로 추정이 된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여가 및 재충전 활동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7]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 관련 복지 서비스 요구

구 분	응답자수	비중(%)
복지 서비스	방과후 교육서비스	97
	영·유아 보육 서비스	91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64
	가정·생활상담	92
	기타	91
	합계	435
	무응답	43
합계	478	100.0

○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 관련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분포가 나타난 것은 각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이 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는 방과후교육서비스에 대다수가 응답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부모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 및 생활상담 서비스에 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부부 갈등, 부부-자녀 갈등, 고부-갈등 등 가정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3)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국제구제금융체제(IMF) 이후 사업장이나 생활지역에서,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서의 노동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이다.

1) 노동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① 각 서비스별 이용 실태

○ 응답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직업훈련, 노동상담, 취업알선, 여가활동 등의 노동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8]와 같다.

[표-8] 조사응답자의 노동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구분	직업훈련	노동상담	취업알선	여가활동
없음	85.1% (407)	79.9% (382)	82.6% (395)	85.8% (410)
있음	13.4% (64)	18.6% (89)	16.1% (77)	13.0% (62)
무응답	1.5% (7)	1.5% (7)	1.3% (6)	1.3% (6)
계	100% (478)	100% (478)	100% (478)	100% (478)

조사결과 기업 내 복지가 열악한 영세중소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직업훈련 13.3%, 노동상담 18.6%, 취업알선 16.1%, 여가활동 13%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고용 및 노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영세 사업체 노동자에게는 실재적인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한편 각 각의 노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응답자의 노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미이용 사유 (유효퍼센트 %)

구분	직업훈련	노동상담	취업알선	여가활동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8.5%	6.4%	9.0%	11.9%
시간이 없어서	14.5%	4.8%	2.6%	32.1%
돈이 없어서	0.7%	0.5%	1.5%	10.0%
정보를 몰라서	41.1 %	38.8 %	35.7 %	31.6 %
필요성이 없어서	31.4%	43.1%	46.8%	12.7%
기타	3.7%	6.4%	4.4%	1.7%
계	100 %	100 %	100 %	100 %

조사결과 직업훈련은 41.1%, 노동상담은 38.8%, 취업알선은 35.7%, 여가 및 재충전은 31.6%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필요성이 없어서’에는 직업훈련 31.4%, 노동상담 43.1%, 취업알선 46.8%, 여가 및 재충전 12.7%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정부의 공공노동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신뢰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 기업복지가 거의 부재하고, 노동복지 여건이 취약한 중소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은 ‘이용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복지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제공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정보를 몰라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여가 및 재충전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32.1%가 ‘시간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나타났다. 반면 ‘필요성이 없어서’는 12.7%에 불과하다. 이를 통하여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이 여가 및 재충전 활동에 대한 욕구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에 적당한 서비스 기관이 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대다수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업장 인근 지역에 서비스 기관이 없으면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수동과 같이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작은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각 서비스별 이용 기관 실태

○ 조사응답자의 노동복지 서비스별 이용기관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여기서의 결과는 응답자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반영한 것이다.

[표-10] 서비스 이용자 중 이용한 기관 실태

구분	직업훈련	노동상담	취업알선	여가활동
고용안정센터(노동부)	45.3%(29)	53.9%(48)	50.6%(39)	-
지역사회종합복지관	9.4%(6)	2.2%(2)	3.9%(3)	14.5%(9)
구청 및 동사무소	6.3%(4)	-	13.0%(10)	24.2%(15)
노동조합	1.6%(1)	31.5%(28)	7.8%(6)	8.1%(5)
지역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6.3%(4)	4.5%(4)	6.5%(5)	21.0%(13)
기타	23.4%(15)	4.5%(4)	16.9%(13)	32.3%(20)
무응답	7.8%(5)	3.4%(3)	1.3%(1)	-
계	100% (59)	100% (86)	100% (77)	100% (62)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직업훈련, 노동상담,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약 50%로 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들의 노동복지 서비스 접근율은 10%대였다. 이 10%의 이용자중 50%가 정부의 공공노동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노동복지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수요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용도는 더욱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노동상담 분야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상담률이 31.5%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는 거의 대부분 상담을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조사응답자가 31명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가활동의 이용기관에서, 각각의 기관 및 단체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동사무소 이용률이 높은 것은 최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이용률이 적은 것은 조사의 주대상 지역인 성수권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조기축구회, 등산 모임 참여로 응답하였다. 이는 공공노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취약한 조건에서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지역 내 동종 업종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③ 조사응답자의 노동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 조사응답자의 노동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욕구는 아래 [표-11]와 같다.

[표-11] 현재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구 분	응답자수	비중(%)
내용	직업훈련	56
	노동상담	64
	취업알선	114
	여가,취미활동	204
	기타	26
	합계	464
	무응답	14
합계	478	100.0

조사결과 '여가 및 취미활동'에 42.7%, 취업알선에 23.8%, 노동상담 13.4%, 직업훈련에 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요 요인 교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와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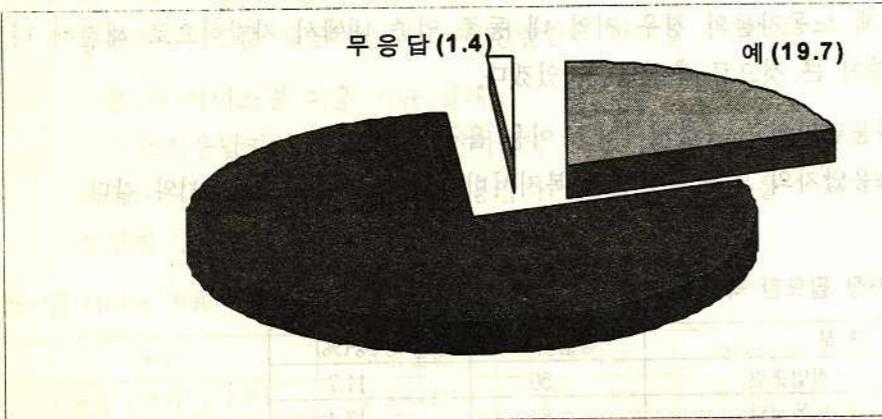
○ 조사응답자들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아 사업장내 복지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가 및 취미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나가고 있다. 특히 주 5일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문화·생활적인 욕구는 높으나,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저소득 가구와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하는 공공노동복지서비스기관이 존재하여 이들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조사응답자의 지역보건서비스 이용 실태

○ 조사응답자의 지역 보건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조사응답자의 지역보건소 이용 실태



조사결과, 지역 보건소 이용 현황은 압도적 다수인 78.9%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의 공공보건시설인 보건소에 대한 접근도 및 이용도가 극히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주 조사 대상지역이 영세중소사업장 밀집지역인 성수동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이용도는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조사응답자의 지역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조사응답자의 지역보건소 미이용 사유

구 분		응답자수	비중(%)
미이용 사유			
	거리가 멀어서	101	26.8
	잘 모름	129	34.2
	서비스 불만족	42	11.1
	기타	82	21.8
	합계	354	93.9
	무응답	23	6.1
합 계		377	100.0

조사결과, 보건소 미이용 사유로는 '잘 몰라서' 34.2%, '거리가 멀어서' 26.8%, '서비스 불만족' 1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 조사 대상지역이 성수동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결과를 추정해보면, 조사응답자들은 보건소의 위치는 알고 있지만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위치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성동구의 보건소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성수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노동안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 접근 기회가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지역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와 접근도는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 공공보건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참여정부는 인구 도시형 보건지소를 2008년까지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노동안전의 취약지역인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도 정책적으로 노동자들과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공단형 보건지소'가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실직노동자의 실태 및 욕구

(1) 조사 응답자(실직자)의 특성

○ 아래 [표-13]은 조사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조사응답자는 총 58명이었다.

[표-13] 조사응답자(실직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배우자의 경제활동	자영업	9	15.5	100만원미만	21	36.2
	정규직	11	19.0	200만원미만	17	29.3
	임시직	2	3.4	300만원미만	11	19.0
	파견직	1	1.7	400만원미만	1	1.7
	소사장제	1	1.7	500만원미만	3	5.2
	가내부업	1	1.7	500만원이상	1	1.7
	비경제활동	5	8.6	합계	54	93.1
	해당사항 없음	15	25.9	무응답	4	6.9
	전업주부	3	5.2	본인	15	25.9
	합계	48	82.8	배우자	26	44.8
지역	무응답	10	17.2	부모	7	12.1
	서울 성동구	35	60.3	자녀	5	8.6
	서울 기타지역	21	36.2	형제, 자매	1	1.7
	경기, 인천	1	1.7	기타	1	1.7
	합계	57	98.3	합계	55	94.8
주거	무응답	1	1.7	무응답	3	5.2
	부모	9	15.5	미혼	16	27.6
	자가	17	29.3	기혼	41	70.7
	전세	12	20.7	합계	57	98.3
	월세	12	20.7	무응답	1	1.7
	무상	5	8.6	남성	26	44.8
	합계	55	94.8	여성	31	53.4
학력	무응답	3	5.2	합계	57	98.3
	중졸이하	13	22.4	무응답	1	1.7
	고졸	32	55.2	독신가구	9	15.5
	전문대졸	6	10.3	2인 가구	8	13.8
	대학이상	4	6.9	3-4인가구	30	51.7
	합계	55	94.8	5인이상 가구	9	15.5
	무응답	3	5.2	소계	56	96.6

1) 조사응답자(실직자)의 성별 · 학력 · 결혼 유무

○ 응답자 총 58명 중 남성은 44.8%(26명), 여성은 53.4%(31명)이었다. 이들 중 7.6%(4명)은 미혼이었고, 70.7%(41명)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22.4%(13명)가 중졸 이하, 55.2%(32명)가 고졸 이하, 10.3%(6명)가 전문대졸, 6.9%(4명)이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중등 이하의 학력이다. 또한 주로 생산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2) 조사응답자의 주거형태,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의 특성

○ 응답자 가구의 주거형태는 15.5%(9명) 부모집, 29.3%(17명)가 자가주택, 20.7%(12명)이 전세, 20.7%(12명)이 월세, 8.6%(5명) 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 가량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응답자의 소득 수준은 36.2%(21명)가 100만원 미만, 29.3%(17명)가 200만 원 미만, 19.0%(11명) 300만원 미만, 8.6%(5명) 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65% 가량이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응답자의 주된 생계유지자는 44.8%(26명)가 배우자, 25.9%(15명)가 본인, 12.1%(7명)는 부모, 8.6%(자녀)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답한 응답한 경우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은 가사 및 양육으로 인한 미취업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여성 실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한 경우의 여성은 가사·양육으로 인해 미취업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생계유지자'라고 한 여성의 경우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 따라서 실직노동자의 미약한 가구 소득수준,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가정에서의 경제적문제와 일자리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 실직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실직상태의 실태

1) 실직 노동자의 구직활동 실태

○ 조사응답자의 구직 활동 실태를 종합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조사응답자의 구직활동 실태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직 활동 내용 (중복응답)	친구, 친지	13 41.9
	학교, 학원, 스승	5 16.1
	공공직업안내소	7 22.6
	유료 민간직업소개소	3 9.7
	무료 민간직업소개소	4 12.9
	스스로 구직활동	12 38.7
	취업 박람회	4 12.9
	인터넷 구인광고	10 32.3
	신문, 벽보, TV 광고	18 58.1
	인력시장	4 12.9
민간용역업체(파견)		3 9.7
평균 구직활동 기간		11개월

○ 조사 결과, 주된 구직 활동은 '신문·벽보·TV 광고' 58.1%, '친구·친지 등'이라는 의견이 41.9%, '스스로 구직활동' 38.7%, '공공직업안내소'에 22.6%, '무료민간직업'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11개월이었다. 따라서 실직 상태에 있는 조사응답자의 경우 고용안정센터 등과 같은 정부의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활동보다 민간이나 사적영역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 정부의 취업알선 기관인 고용안정센터는 2·30대 전문직,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저학력, 중장년 층인 실직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이다. 평균 구직 활동기간은 11개월로 상당히 장시간 구직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이들의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2) 실직 사유 및 실직상태의 생계유지

○ 조사응답자의 실직 상유 및 실직상태에서의 생계유지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조사응답자(실직자)의 실직 사유 및 생계유지 실태

구분	성별		전체	구분	응답자수	비중(%)
	남성	여성				
실직 사유	사업장 이전, 폐업	6 (23.1%)	3 (10.0%)	9 (16.1%)	생계 유지 방법	실업급여 3 5.2
	정리해고, 감원	6 (23.1%)	1 (3.3%)	7 (12.5%)		저축 8 13.8
	근로조건 열악	1 (3.8%)	3 (10.0%)	4 (7.1%)		배우자 소득 22 37.9
	저임금	2 (7.7%)	2 (6.7%)	4 (7.1%)		가족, 친지 도움 11 19.0
	고용 불안	0 (.0%)	1 (3.3%)	1 (1.8%)		빚 5 8.6
	장래성 부재	4 (15.4%)	0 (.0%)	4 (7.1%)		부정기적 수입 5 8.6
	계약기간 만료	1 (3.8%)	1 (3.3%)	2 (3.6%)		기타 3 5.2
	사업주와의 채용 조건	0 (.0%)	1 (3.3%)	1 (1.8%)		무용답 1 1.7
	집안 사정	1 (3.8%)	11 (36.7%)	12 (21.4%)		합계 58 100.0
	학업, 건강등 개인사유	3 (11.5%)	6 (20.0%)	9 (16.1%)		
	기타	2 (7.7%)	1 (3.3%)	3 (5.4%)		
전체		26 (100.0%)	30 (100.0%)	56 (100.0%)		

조사결과, '학업, 건강 등의 개인적 사유'는 16.1%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실직상태에 있다. 그러한 실직의 주요 사유에는 사업장의 이전, 폐업, 정리해고, 감원,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고용불안, 장래성 부재,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와의 채용 조건 등이다.

○ 실직 기간중 생계유지는 배우자 37.9%(22명), '가족 친지의 도움' 19.0%, '저축' 13.8%(11명), 빚, 부정기적 수입, 실업급여 등이었다. 안정적인 배우자 수입이 없는 가구가 60% 가량 되고 있어, 실직이 장기간 될 경우 가구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한 인식

○ 조사응답자의 정부 고용안정대책과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정부 고용안정 대책에 대한 인식

고용안정 대책		
구분	응답자수	비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12	20.7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망 확대	10	17.2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	17	29.3
기업 고용안정 지원	8	13.8
개인사업자금 용자	6	10.3
기타	4	6.9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조사결과,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신규일자리창출 노력' 27.3%(17명),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20.7%(12명), '공공직업소개'와 '취업정보망 확대'가 각각 7.2%(10명), '기업고용안정지원' 13.8%(8명), '개인사업자금 용자' 10.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공공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4) 기타 - 공동노동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지역에서의 '노동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임시·일용직 실직자의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과 공공직업 및 취업지원 기능의 센터 확대, 고용 정보망 확대가 필요하다.

5. 조사결과 요약

(1) 영세사업장 노동자 개인 및 가정에서의 어려움 및 주거실태

1) 개인 및 가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 개인 및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1순위에서 49%로 경제적 어려움, 2순위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3순위에서는 일자리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1-2-3순위 고르게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일자리 불안 문제-주거문제-문화활동 부족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주거실태

○ 응답자의 71.7 %는 전, 월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세 거주자는 36.2%이고, 월세 거주자는 13.2%였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9.3%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의 보증금은 평균 5,675만원 이었으며, 월세 평균은 27만원에 달하였다.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 대의 저임금 상태에 처해있는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세 보증금도 6,000만원이 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실로 버거운 일이다.

(2) 공공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1) 공공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 방과 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유경험자는 설문 응답자의 5%인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은 동 자치센터, 지역복지관, 종교단체, 지역 시민단체 등이었다. 한편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응답자의 4.6%인 22명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관은 구립 및 지역, 직장 보육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공공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 조사결과, '방과후교육서비스' 20.3%, '영·유아 보육서비스' 19%, '가정 및 생활상담서비스' 19.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3.4%, '기타' 19%, '무응답 9%'

등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 관련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각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는 방과후교육서비스에 대다수가 응답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 및 생활상담 서비스에 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부부 갈등, 부부-자녀 갈등, 고부 갈등 등 가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3) 노동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1) 노동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 직업훈련 13.3%, 노동상담 18.6%, 취업알선 16.1%, 여가활동 13%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고용 및 노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영세 사업체 노동자에게는 실제적인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10%대의 이용자 중 과반수 정도가 고용안정센터 등의 정부의 공공노동복지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정보를 잘 모르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노동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정부의 공공노동복지서비스가 중소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즉 ‘정보 부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 공공노동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낮은 원인이다.

2) 노동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 조사결과, ‘여가 및 취미활동’에 42.7%, 취업알선에 23.8%, 노동상담 13.4%, 직업훈련에 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요 요인 교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와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오고 있다.

(4) 지역보건서비스 이용 실태

○ 지역 보건소 이용 현황은 압도적 다수인 78.9%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의 공공보건시설인 보건소에 대한 접근도 및 이용도가 극히 저조

함을 나타내고 있다. 주 조사 대상지역이 영세중소사업장 밀집지역인 성수동의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혜정도는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노동안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 접근 기회가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지역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와 접근도는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 공공보건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참여정부는 인구 도시형 보건지소를 2008년까지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노동안전의 취약 지역인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도 정책적으로 노동자들과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공단형 보건지소’가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5) 실직 노동자의 구직활동 실태

1) 실직 노동자의 구직활동 실태

○ 주된 구직 활동은 ‘신문·벽보·TV 광고’ 58.1%, ‘친구·친지 등’이라는 의견이 41.9%, ‘스스로 구직활동’ 38.7%, ‘공공직업안내소’에 22.6%, ‘무료민간직업’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11개월이었다. 따라서 실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센터 등과 같은 정부의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보다는 민간이나 사적영역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2) 실직 사유 및 실직상태의 생계유지

○ ‘학업, 건강 등의 개인적 사유’는 16.1%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실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실직의 주요 사유에는 사업장의 이전, 폐업, 정리해고, 감원,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고용불안, 장래성 부재,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와의 채용 조건 등이다.

○ 실직 기간 중 생계유지는 배우자 37.9%(22명), ‘가족 친지의 도움’ 19.0%, ‘저축’ 13.8%(11명), 빚, 부정기적 수입, 실업급여 등이었다. 안정적인 배우자 수입이 없는 가구가 60% 가량 되고 있어, 실직이 장기간 될 경우 가구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한 인식

○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신규일자리창출 노력’ 27.3%(17명),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20.7%(12명), ‘공공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망 확대’가 각각 7.2%(10

명), '기업고용안정지원' 13.8%(8명), '개인사업자금 융자' 10.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공공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6. 조사결과가 주는 사회 정책적 과제

(1) 참여정부의 고용 및 노동복지관련 정책

○ 2005년 노동부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목표는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5%성장·40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과 함께 특히 고용·복지 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쟁촉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정망 강화 및 복지증진·근로조건 보호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방향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중심이며,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완화는 소극적이다. 경쟁촉진과 구조조정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 및 복지 분야에서 중소업체 종사노동자, 실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이기 보다는 보충적인 서비스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고용 및 복지 분야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며,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2) 노동복지정책의 과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적용되는 저소득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관련 정책은 ① 주거안정 지원 ② 생활안정지원(학자금지원) ③ 우리사주제도 ④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⑤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사업들이다. 저소득·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먼 우리사주제도를 제외하고 4가지 사업 영역의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과제를 제시한다.

1)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과제

근로자 주택제도, 주택·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무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대상선정 원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제도의 경우 일정한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배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욕구가 큰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욕구 원칙에 일치하고 있지만 근로자 주택제도는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욕구원칙과 다른 적용대상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박찬임, 2002)

이러한 무주택 노동자 주거지원 정책은 국민의 정부시기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 보다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노동자,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부 노동백서에서도 노동자 주거지원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정책 과제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물론 현행 제도상으로 소득 기준으로 ‘근로자 전세 및 주택자금 융자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거 지원 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4대 보험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복지증진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동부 2001년 근로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정책의 과제

○ 참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해소와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근로자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총 7,164명에게 95억원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근로자 1인의 월평균임금 기준에서, 배우자 월평균임금 및 가구 재산세과세액 내지 종합토지세과세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노동백서, 2005)

생활안정사업이 대부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반해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해 목적성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타당한 정책 지원이다. 그러나 앞서 주거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득 기준을 증명하기 힘든 5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경우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 정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공공직장보육시설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가 2005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유시설의 규모와 보육수요에 따라 야간보육, 방과후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노동백서, 2005)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밀집 지역 공공직장 보육 시설 및 방과후 교육 시설은 노동자들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보육 및 방과후 교육 지원시설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초·중등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기능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정책의 과제

○ 2005년 발표한 노동백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실시해 온 지자체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사업(건축비 50%)을 2004년 7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 제32조의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및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 대상의 복지 지원 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과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가 주관 부서를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 이것을 통해 추정해 보면, 참여정부의 공공노동복지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노동복지 지원 시설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해 기관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노동복지 프로그램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지방분권이양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시설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공공노동복지시설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계획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및 운영 내실화'라고 정책과제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2006년까지 지원후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정부의 공공노동복지시설 지원 회피 정책은 '근로자의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 지원제도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그러한 제도의 이용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여가, 문화, 노동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노동복지시설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일차적으로 공공노동복지센터는 주요 정책 대상을 중소영세사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센터는 공공보육 및 교육, 노동 및 고용지원, 공공의료 지원 등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기보다는,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참조하여 영세사업체 밀집지역에서 노동·보건·복지 통합 센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4) 노동자 참여를 통한 노동복지정책 강화의 과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우선, 근로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양대노총 및 경제5단체, 학계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 시·도의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는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는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 노동자의 정책과정 참여라고 할 때, 정부의 근로복지정책 추진 의지가 지방정부까지 강제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복지 특성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때, 광역 단위까지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한다.

5)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의 과제

2002년 수립된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 스스로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충이 긴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의 규모와 요구는 커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아래 [표-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7] 근로복지진흥기금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단위: 억원)

구분	총누계	'95	'96	'97	'98	'99	2000	2001
출연금	1,320	150	150	150	300	250	150	170

정부는 근로자복지사업의 재정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복권사업 수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정부 출연금의 규모는 IMF 시기인 1998년과 1999년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가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정부가 과연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진근로자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 과제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마련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3)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

1)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의 과제

○ 중소영세사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육성 정책이다. 산업의 안정화 없이 고용안정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퇴출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따라서 첨단 산업, 벤처기업이 아닌 다수의 중소영세제조업은 정부 보호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 따라서, 참여정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중소영세사업체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적 육성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노동자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 노동복지 격차³³⁾에 대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중

33) 2002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복지비 지출비용이 102.3천원, 대기업 190.2천으로 나와 있다.(2002-2006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그러나 50인 미만의 소기업

소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약한 노동복지 여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중소산업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오로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중소영세사업체와 노동자 배제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IMF 때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2) 고용취약계층(여성, 중장년 실업자 등)에 대한 고용지원정책의 과제

○ 한편 참여정부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 888개 단체, 3281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공공취업알선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 15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종합센터와 일반센터 등으로 개편하고 있다. (노동백서, 2005)

○ 우선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정책은 더욱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실업자, 장기실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편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하여, 정부 정책 방향처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3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요구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 그리고 공공취업알선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이다. 임시직, 일용직, 중장년 등의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4)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역보건센터 정책 과제

○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보건정책은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하여 이미 '인구 5만 명당 1개소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도시형보건지소는 통상 도시지역에 보건소 1개만 설립되어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의료 취약 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소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참여정부는 보건지소 설립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덧붙여,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있

의 경우는 1인당 복지비가 이보다 훨씬 미약한 상황이다.